

제33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6월17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아동 살인 등 아동대상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20. 살인죄 등 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일수벌금형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
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5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5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5.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66.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6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9.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0.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1.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3.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74. 스토킹 방지법안
75.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76.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77.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78. 고문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79.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8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1.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계속)
82. 집단소송법안
8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9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
9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9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9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된 안건

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5
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5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5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5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2)(계속) 24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24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4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4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38) 24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4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4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24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4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4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4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9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25
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5
19. 아동 살인 등 아동대상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5
20. 살인죄 등 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5
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희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51
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계속)	51
2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계속)	51
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계속)	51
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 의원 대표 발의)(계속)	51
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 발의)(계속)	51
3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6337)(계속)	51
3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1
3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 발의)(계속)	51
3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계속)	51
3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 발의)(계속)	51
3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9610)(계속)	51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10268)(계속)	51
3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계속)	51
4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 발의)(계속)	51
4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12994)	51
4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15250)	51
8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65
9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65
9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65
9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65
9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65
9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65

(10시11분 개의)

○소위원장 이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 4/4분기가 되어 가지고 임기 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는 후반기에 들어 왔고 후반기의 전반은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진행도 원활하게 해주시고 많은 성과를 거두어주셨습니다. 특히 또 2소위원장을 맡고 계신 전해철 간사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참여 속에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회의 고유법안이 현재 한 730건 정도 쌓여있어서, 개정안을 내신 분들은 나름대로 고견과 검토와 연구를 거친 끝에 내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쯤은 검토하고 논의를 해 드리는 게 도리다 이런 생각하에서 비록 임기 말이긴 하지만 법안에 대해서 한 번 훑어보는 기회는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하에서 우리 1소위 위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위에 참여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짧게 하라니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소위원장님, 환영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박수를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대단히 황송합니다.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를 프린트에 해놓은 의사일정에서 조금 변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법안이 간단하고 또 논란이 적을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빗발치는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논의 순서를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의사일정 26항부터 42항까지 특사경법 개정안입니다.

○전해철 위원 순서대로 그냥 하시면 안 될까요?

○소위원장 이한성 위원장님께서……

○전해철 위원 위원장님, 특사경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위원장 이상민 정갑윤 부의장님하고 원혜영 선배님이 오신 건 특허법원 관할 집중 때문에 오셨어요.

○소위원장 이한성 아까는 또 특사경 해 달라고 그러더니 바뀌었어요?

○전해철 위원 아니, 순서는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특사경을 먼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상민 그건 그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전해철 위원 그냥 순서대로 하세요.

○위원장 이상민 제 건의사항은 두 분이 오셨으니까 특허법원 하시고 다음에 특사경을……

○전해철 위원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자이신 원혜영 전 대표님께서 오시고 참관해 계시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순서를 다시 환원해서 1항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10시16분)

○소위원장 이한성 의사일정 제1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강남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남일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2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임재주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위원장님하고 정갑윤 부의장께서 대표발의하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식재산권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이걸 ‘특허권 등’이라고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특허권 등’ 외의 지식재산권 이렇게 지식재산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걸 전제로 해서 특허권 등에 관한 소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 안이 똑같은데 여기에 부의장님 안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전속관할을 정함에 있어서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해서 전속관할을 인정하고 전속관할이 정해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이더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통상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는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행법하고 위원장님 안 그리고 부의장님 안을 대별을 해 놓았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24조는 원칙적인 보통재판적 외에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즉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보통재판적 외에도 이렇게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적인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개정안들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하면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특허권 등 다섯 가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전속관할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안은 여기에 덧붙여서 개정안 24조2항 단서에서 ‘서울고등법원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법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3항에서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적인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덧붙여져 있는 것이 다소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정갑윤 부의장님 안에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그곳을 관할하는 곳은 서울고등법원이고,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을 뭐로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하자는 것이 보다 명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소를 지방법원 전속관할로 하자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가적·경합적 토지관할 외에 이렇게 하는 태도에서 나아가 특허권 등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전속관할을 인정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현행법상 전국 18개 지방법원과 40개 지원에서 모두 특허권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5개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서만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는 취지는 이렇게 5개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이른바 설권적 권리입니다. 즉, 특허청 등에 등록을 한 경우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등은 등록과 관계없이 저작행위 자체로 권리가 만들어지는 비설권적 권리입니다.

특허권 등에 관한 소는 이렇게 설권적 권리고 상대적으로 고액이고, 그리고 설정심사와 설정등록의 적법성에 관한 심리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면 이 전문적인 사안을 심사할 수 있는 법원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전속관할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타당한 안으로 보이지만, 단지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법 접근성을 일정 부분 제약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정해서 전속관할을 인정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대부분의 사건이 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서울의 경우에 다른 4개 지역 법원을 배제하고 중앙지방법원으로 1심법원을 단일화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봐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경우, 즉 다른 지역의 전속관할이 인정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5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는데 또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복적인 전속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밑에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재량이송을 인정하자는 부의장님 안에 대해서는 전속관할이 정해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문성 제고와 효율성 도모라는 전속관할 제도 도입 취지가 약화될 수도 있지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는 전속관할을 두게 되면 지나치게 경직된 전속관할 규정 때문에 초래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재량이송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개정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다음은 임재주 전문위원, 그 다음 항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재주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 먼저 이상민 의원님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내용은 금방 보고드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견제하는 개정안입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조제2항에 따라서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이 관할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1심 관할을 전속관할로 하자는 거고 지금 이 개정안은 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내용인데 이 내용은 3페이지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허침해소송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23개 원의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판단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관할로 집중함으로써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 및 신속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28조의4에서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아까 보고드린 내용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에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른쪽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종류를 크게 특허법원에 의한 심결취소소송하고 일반법원에 의한 특허소송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를 말하는데 1심은 특허법원이 하고 최종적인 2심은 대법원이 각각 관할하는 2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은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제3자

에 의해서 특허권 등이 침해된 경우에 더 이상 침해가 없도록 하는 침해금지청구소송 또는 그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일반 민사소송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제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 제2심은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제3심은 대법원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특허소송은 심결취소소송은 고등법원격인 특허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의 제2심은 일반법원의 항소심 재판부에서 각각 관할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을 일반 민사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의한 분쟁이다 그런 성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할 경우에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의 제2심을 현행과 같이 일반법원의 관할로 할 경우에는 관련 사건에 대하여 일반법원과 특허법원의 결론이 또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일부 있고 그렇게 될 경우 불필요한 상소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재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아가 특허법원은 고도로 전문화·국제화된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결을 집중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허소송의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7페이지 동그라미, 일부 사소한 내용입니다만, 다만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까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에 있는 제3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기로 보이고 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의 관할로 하는 경우 일반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리관의 심리 참여범위 확대 내용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시면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

을 특허법원 관할로 집중함에 따라 기술심리관을 특허법원 관할의 모든 사건 심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법원조직법 및 기술심리관규칙에 따른 기술심리관은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특허청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거나 또는 과학기술을 전공하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사건 재판의 전 과정에서 수시로 재판부로부터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비 절차 및 변론기일의 심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침해사건에 관한 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여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개정안처럼 강화하고자 한다면 기술심리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기술심리관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도 심결취소소송에 한정하지 않고 특허침해소송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주현 1·2항 특허법원 관련되는 관할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해결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대폭 공감합니다.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이나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특허법원에서 항소심 관할사건을 모두 재판하는 것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국민 불편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셔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법무부는 네 가지 법안에 다 찬성입니까?

○법무부차관 김주현 찬성의견은 아닙니다만 접근성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이한성 잘 안 들려서 못 들어 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법안의 전문성을 높이거나 신속한 해결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다만 관할 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또 접근성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국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취지나 내용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런 불편함이나 그런데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알겠습니다.

법원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특허침해소송이 문제 되는데요, 특허침해소송의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할 집중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입장은 찬성이고요.

다만 말씀드릴 것은 기술심리관의 심리 범위에 관해서 특허침해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입니다. 그런데 기술심리관 제도는 특허법원의 특허소송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술심리관이 민사소송의 성격을 갖는 특허침해소송의 심리에 까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만 반대합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는 약간 유예기간을 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법원에서는 지금 특허침해소송을 대전으로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 불편 이런 것은 괜찮다 이런 입장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지금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장 전문성을 가진 법원인데요, 특허침해소송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다소간 불편이 따르는 국민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거의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런 불편은 크게 있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중복적 관할을 인정한 정갑윤 의원님 안, 그것은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허침해소송에 관해서는 가장 전문적인 법원입니다. 지금도 전문재판부가 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전속관할을 두는 것과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정갑윤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그 개정안에도 찬성한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대전하고 중앙지법하고 두 군데 관할을 인정한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차장님, 그렇게 선택적으로 해 버리면 당사자 간에 관할 문제를 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서 관할을 이송하겠다는지 이런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재량이송이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 더더욱 그렇지, 재량이송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재량이송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앙으로 이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여러 경로를 통하거나 어떤 변론을 통해서 나는 지방이 아니라 꼭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전속관할만 딱 정해 놓으면 거기에서 그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유불리에 따라서 전속관할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적절치 못한 시도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는 쌍방 당사자가 동의를 해서 중앙지방법원의 재판을 받겠다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읍 위원 동의를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올 겁니다.

○김도읍 위원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그것도 법률로 규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동의가 안 되어 있다면 재량이송 규정을 활용할 수 있겠지요. 있다고 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재량이송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관할 문제는 법원의 입장이 있겠지요? 당연히 법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는 법원을 이용하는 입장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법무부 의견도 각계의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순서상 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먼저 강남일 전문위원이 했던 1·2번 보고 3번을 하는 게 나올 것 같아요. 변협의 의견은 됩니까?

○전문위원 강남일 변협은 좀 부정적입니다.

○전해철 위원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부정적이라고 하지 말고 논거가 뭐고 왜 부정이고.

○전문위원 강남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허사건을 주로 하는 특허법원이 있는 대전에 사건이 몰리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든 사건이, 결국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한 모든 사건이 몰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방의 경우 거의 특허사건을 다루어 볼 수도 없고 지방에 거주하는 특허관련 분쟁 당사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찌됐건 지방에 거점, 그러니까 지금 5개 전속관할이라는 규정도 중복관할이 인정되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다른 4개 지역의 당사자들의 소송과 관련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변협 등에서는 그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중복관할을 인정 안 한다면?

○전문위원 강남일 중복관할을 인정 안 한다면 그나마 완화가 되겠지만, 대체로 변협에서는 그렇게 5개로 묶는 것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이지만 그나마 중복관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5개 정도의 거점으로 나누는 것은 그보다는 훨씬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전해철 위원 기왕의 항소심에 대한 변협의 의견은 뭐예요?

○전문위원 임재주 항소심도 같은 의견으로 보입니다.

○전해철 위원 논거는? 논거가 좀 다르지 않아요?

○전문위원 임재주 항소심도 침해소송을 지금은 각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특허법원으로 항소심을 모으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서 하던 것을 못 맡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지요, 그쪽에 있는

변호사들이.

○**전문위원 강남일**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변협이 반대하는 가장 큰 논거는 소위 말하는 특허권 등 5개 지식재산권하고 그 외의 지식재산권을 나누는 근거에 대해서 일단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나누는 것은 전부 5개의 지식재산권은 설권적 권리라고 보는 것이고 저작권은 설권적 권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구별은 가능합니다만 지식재산권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그것을 달리 차별해서, 예를 들어서 5개의 지식재산권에 해당되는 것은 5개 전속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 관할을 집중시키고 그 외의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재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구별, 그 구별이 차별이 된다고 보는 게 변협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회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5개로 묶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전해철 위원** 그리고 변협 말고 다른 데 각계 의견 들어 본 것 있어요?

○**위원장 이상민** 변리사회는 찬성하잖아요, 변리사회.

○**전문위원 강남일** 변리사회는 찬성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변리사회는 그렇겠지요.

○**전해철 위원** 임재주 전문위원이나 두 분 다 변협 말고 다른 데 의견 들어본 것 있어요?

○**전문위원 강남일** 다른 데 의견은 저희가 특별하게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홍일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일표 위원** 특허권, 실용신안권하고 다른 사건으로 나눌 경우에 변협에서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가 행정처 차장님, 특허권과 관련된 쟁점이 유일한 경우만 여기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여러 쟁점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그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느냐 이런 분류가 좀 애매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이 되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침해소송의 경우에는 대부분 특허권 등의 침해와 관련된 쟁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아니, 침해가 아닌 사건으로 분류할 때 이게 그 사건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여기에 관한 쟁점만이 유일한 쟁점인 사건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거냐, 여러 쟁점 중에 그게 하나만

들어갔어도 그것은 여기에 포함돼서 전속관할로 가야 될 거냐 이런 사건 분류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일부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까마는 주 쟁점이 특허권침해소송이면 침해소송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니까 주 쟁점이나 그런 것도 사실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저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을 배당할 때 역시 같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전문재판부,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전문재판부에 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 쟁점이 침해소송인 경우에는 전문재판부로 배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임재주**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다시……

법원행정처뿐만 아니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하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도 특허소송 항소심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그리고 한 가지만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법원 자체의 의견이 아니고 행정부 관련 기관들, 특허청이라든지 이런 데와 다 의견이 조율된 안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런데 법무부는 지금 아니잖아요.

○**홍일표 위원** 하여간 이게 전문성이 있고 여기에 관련된 것은 통일해서 재판해야 된다는 필요도 있고 또 외국에도 이런 유사한 게 있습니까? 외국 사례는 연구해 본 것 없어요, 그러니까 2심 말고? 강남일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남일** 1심의 경우에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체로 일반소송의 경우로 보기 때문에 우리처럼 달리 취급해서 특허와 관련됐다고, 지식재산권하고 관련됐다고 해서 반드시 특허법원에 전부 모아서 일부 법원에만 관할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일반 민사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일본의 경우에는 고등재판소에 지식재산권 고등재판부가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중국도 세 곳으로 집중하고……

○**소위원장 이한성** 이따 말씀하시고, 우선 서기호 위원님하고 서영교 위원님 두 분……

○**서기호 위원** 중복관할 부분에서 합의관할만 인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양쪽 당사자가 합의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겠다,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그런데 침해소송의 경우에 합의관할이 상정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침해자와 피침해자 사이에 관할 합의가 미리 있으리라는 것은 잘 상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아까 차장님은 왜 그것을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잠깐 제가 그 생각을……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법안의 취지도 알겠고 또 문제점도 알겠고 서로가 조금씩 취지와 문제점을 다같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은 여기서 결단을 해야 나오는 거고, 구체적인 현장상황을 좀 더 보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소위원장 이한성**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김진태 위원** 없습니다.

○**전해철 위원** 제가 추가로 좀 할게요.

중복관할을 하는데 중복관할을 중앙지방법원에 인정한 이유가 뭐예요? 중앙지방법원이 현재 전문성이 있어서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그렇습니다. 가장 사건 수도 많고 전문성이 가장 갖춰진 법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런데 거꾸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그것은 전혀 안 맞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목포 순천에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지금 하고 있는 법원에 편의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중복관할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대안이나 해결책이 아닌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참고로 사건 수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 침해소송 합계가 약 1300건인데 그 가운데 서울 관내 사건이 1230건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서

울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대전이 1.4%, 대구가 0.8%, 부산이 0.8%, 광주가 0.5%, 사건 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기호 위원** 굉장한 차이네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거의 대다수가 서울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외국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1심외의 경우에도 동경과 오사카 지방재판소에만 관할이 인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특별히 참관하시는 이상민 법사위원장님 하시지요.

○**위원장 이상민** 특허가 국가경쟁력에 허브가 돼야 되겠다 그것은 필연적인 국가적 과제고요. 그것이 붙은 것이 미국권하고 유럽권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중국, 일본, 한국이 경쟁이 붙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서 인프라가 그래도 경쟁우위에 있는 것이 특허청의 특허등록하는 것하고 특허재판이 다른 데보다도 비용이나 시간 절약 등에 있어서 경쟁우위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법원들을 말하자면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그래서 애플이나 삼성의 분쟁도 한번 시험 삼아서 한국에서 하는……

그런데 우리가 특허전문법원이 생기고 중국, 일본이 뒤따라오면서 누가 동북아의 중심축이 되느냐 하는 경쟁이 붙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세 군데에 집중을 했습니다, 1심부터.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오사카, 동경 두 군데로 집중을 딱 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특허재판의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역 쪽 변호사들이나 변리사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저항이 있어서……

원래는 1심부터 특허법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런데 인적 인프라를 갖추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만약 특허법원만 집중시키면 특히 서울권에 있는 변호사들의 저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타협책으로 그게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아까 차장님이 이런저런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이것을 특허법원에 집중하기 위해서 관철을 해야 되는데 관철하려면 저항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1심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타

협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교육지책으로 한 것이고 마땅히 하려면 특허법원에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칫하다 서울중앙지법의 중복관할을 인정하다 보면 서울중앙지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우려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그걸 한다면 5개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에 1심 관할을 부여하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집중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특허 강국으로 가는 데도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앞서가려면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국권과 유럽권, 동북아시아권에…… 유럽권도 지금 특허법원을 하나로 단일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사이에 선도적 경쟁이 붙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이것을 앞당겨야 된다는 말씀을 건방지게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정갑윤 부의장님께서……

○정갑윤 의원 이상민 위원장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통계에 의하면 특허침해소송 연관 사업들이 연간 시장이 한 500조 된다고 추정합니다. 특히 그중에 우리 동북아, 한중일 3개국의 특허 소유가 굉장히 그런데, 5대 강국 중에 3개국이 들어 있는데 사실 3개국을 놓고 보면 ‘일본’ 그러면 대체로 국수주의가 아주 강한 성격의 나라잖아요. ‘중국’ 하면 아직까지도 삼권분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나라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삼권분립이 제대로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아무래도 신속하고 정확하고 전문성이 있고 이런 재판소를 찾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 독일, 싱가포르 이런 나라인데 동북아의 특허 강국인 3개국이 인접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앞서 가야 한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본은 2개 지역, 중국은 3개 지역 이렇게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지역변호사회 등등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도 5개 고등법원 소재지에 한다는 것은 사실 오히려 좀 약화시키는 일입니다마는 나중에 하다 보면 아까 통계처럼 1300여 건 중에 1200여 건이 서울에서 이루어지듯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전문가를 길러내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다 전문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 보고 이것은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정말 굴뚝 없는 산업, 앞으로 우리의 블루오션인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잘 손보셔 가지고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부의장님, 그러면 중앙지방법원 중복관할 그것은 안 하시는 겁니까?

○정갑윤 의원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서울 시내 5개 법원인가요, 6개 법원인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동남서북, 5개입니다.

○홍일표 위원 5개 법원에서 특허사건은 중앙지법에서만 하자, 이것은 별문제 없어요. 서울 시내의 교통이 워낙 좋고, 북부 관할에서 이 사건을 서초동에 와서 재판한다고 그렇게 큰 불편은 없고.

다만 관내 변호사들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 그러나 특허사건은 원래 전문성이 있어서 아무 변호사나 선임도 못 하고,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은 중앙지법으로 한정해도 별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김도읍 위원 지방에서 올라오잖아요.

○홍일표 위원 지방에서 올라오더라도, 지금 고등법원 소재지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서울만 중앙지법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서울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겁니다.

○김진태 위원 전라도에서 중앙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김도읍 위원 재량이송은 됩니까?

○홍일표 위원 그것은 지금 정갑윤 의원님 안에서 손해·지연을 피하기 위한 그런 이송을 인정하면 또다시 변경은 될 수 있지만……

○김도읍 위원 지방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나 그것은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요건에 해당되어야 되는 거지.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현저한 손해를 피

하기 위한 겁니다.

○**홍일표 위원** 이송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재량이송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합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취지를 우리가 존중한다면 다 수용해도 될 법한데 다만 변호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이나 또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위원장 이상민**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들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들이 사실 법정에 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변호사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 변리사들한테 혹시 소송대리권을 주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게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이러다가 변리사들한테 소송대리권 줘서 변호사의 직역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 이 자체에는 별로 그렇게 완강한 저항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원혜영 대표님 일부러 오셨는데 고견을 좀 밝혀 주십시오.

○**원혜영 의원**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신성장동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모두의 과제이고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우리 사법부의 우수한 자질을 바탕으로 해서, 또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건전한 개방성 이런 것이 동북아 3국 중에서 가장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나가서 세계 특허·지식재산권 소송의 허브를 만들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대한민국 특허소송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를 정갑윤 의원님과 저, 또 이 자리에도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60여 명이 작년부터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법이 국가관할권에 의해서 법정다툼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장벽이 해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쇼핑을 미국으로, 유럽으로 다닙니다. 삼성이나 LG나 한국에서 재판하지 않습니다.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교통이 멀어서가 아니

고 더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 미국 텍사스에 간다든가 캘리포니아에 간다든가 독일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장벽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우리 자체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판의 실정이 특허소송의 승소율이 20% 대입니다. 세계 최하위입니다. 이기더라도 평균 배상금액이 7800만 원입니다. 최근에는 물론 많이 높아졌지만 미국과 유럽은 102억에 해당됩니다. 모든 정성과 자금을 다 바쳐서 개발한 것이 대기업에 의해서 침해당하더라도 7800만 원 보상받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장벽이 없는 특허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집중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해서 이 법안을 동료 의원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 말씀 더 붙이면 후발주자의 강점은 앞에 가는 사람들보다 더 잘, 좋은 대책을 세우는 게 후발주자의 강점인데 다들 말씀하셨지만 중국 같은 거대한 국가가 3개 관할구역으로 가고 일본이 2개로 가는데 우리가 후발주자로 하면서 5개로 가자, 나는 너무 나이브(naive)하고 순진한…… 장벽이 있다면 모르는데 없는 상태에서 후발주자에 있는 사람은 좀더 신발 끈을 단단히 매고 뿔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도 좀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원혜영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논의는 한 바퀴 돌고 다 했는데 오늘 당장 결론 내리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지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다음에는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이상민** 예.

○**홍일표 위원**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서영교 위원** 취지는 다 동감하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이한성** 그런 전제를 깔고.

○**전해철 위원** 전문위원이 변협 의견을 그렇게 개략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홍일표 위원님이 하나 지적했지만 보고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의 논거를 잘 해 보세요.

○**서기호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변협의 의견서

가 나올 때 그것을 위원들한테 돌리지 않나요?

○서영교 위원 의견서를 다 주던데.

○서기호 위원 의견서를 전혀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임재주 알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것은 본인이 원하시면 찾아볼 수는 있으니까.

○서영교 위원 원래 전문위원이 참고로 뒤에 달아 놓잖아요. 자세한 게 있으면 달아 주시고.

○전문위원 임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재량이송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재판과 관련해서도 ‘현저한 손해·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직권·재량이송’ 이런 게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정갑윤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 가는 부분이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서 특허 관련 전문인력들을, 서울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전문인력들을 키워 보자 이런 취지도 강한테 그거하고도 재량이송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한승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한승 지금 저희가 특허법원 관할 집중과 관련해서는……

○소위원장 이한성 성명·직위를 말씀하시는 게 속기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한승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요지에 관해서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 드리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허법원 관할 집중, 또 1심의 관할 집중과 관련된 것은 법원에서 처음 논의를 시작한 게 아니고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처음 논의를 모아서 지식재산위원회에 특허청도 참여하고 법무부도 참여하고 대법원도 참여해서 아까 위원님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은 지금 특허사건이 전부 집중되어 있다, 심지어는 미국의 텍사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렇게 외국에 쇼핑까지 다니고 있는 현실이어서, 오히려 우리는 특허사건이 지방법원 본원에서도 하고 심지어는 지원에서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해도 이게 분산되고, 또 관할 장벽이 심하게 쳐져 있니까 산업계에서 당초에 요청했던 것은 서울과 대전으로 집중해 달라고 하고 변호사회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풀어 줘라,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치열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 논의를 거친 끝에 대법원과 법무부가 사실은 중간역할을 해서 5개 법원에 집중을 하고 그 대신 제일 전문성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중복적인 선택 관할을 가지자라는 것으로 관계 산업계하고 법조가 타협을 해서 이루어진 안이 지금 이 법률안입니다.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도 전체 산업계는 오히려 더 집중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변협은 오히려 더 풀어 주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변협하고도 실제 접촉해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와 같은 관할 집중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고, 관할이 집중되고 또 특허법원으로 2심이 집중되는 그 자체보다 특허법원으로 가게 되면 혹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확대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은 외국에서도 이례적인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하냐 이 점에 관해서 깊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 올리면 외국에서도 1심은 독일하고 일본의 오사카로 집중했고요, 2심은 동경 하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고재가 내는 판결에 대해서는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도 2심은 특허법원에 집중해서 그야말로 최고의 역량을 거기에 모아 가지고 아까 원혜영 대표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허 허브 코트를 만들어서 한중일과 경쟁할 수 있는 특허법원을 만들고 1심도 그러면 5개 고등법원, 실제 사건도 5개 고등법원 소재지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이 90% 이상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1300건 중에 1200건 정도가 서울권에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러나 우리는 접근성이나 지역 이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 5개, 전문성도 키우고 접근성

도 키우고 하는 절충안으로 나온 방안이 이 방안입니다.

지금 재량이송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중앙에 모여 왔다, 부산으로 왔다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현저하게 손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관할은 창설됐지만 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역으로 보낼 수 있는 방안까지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안입니다.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법무부에서도 저희가 듣기에는 다른 의견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이지 저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법무부도 지금 이 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주현 변협의 반대의견도 있고 산업계에도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논의과정에서 그런 이견이 다해소가 돼서 이러한 의견이 나온 것이 아니고 여전히 다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관할을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려면 여기서 법률 만드실 때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변협의 논거를 자세히 보시는 것처럼 산업계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되면 특허를 가지고 불편하게 해 주는 요소들도 있다는 목소리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다음번에 보신다면 같이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김도읍 위원 그때 의견을 미리 줌, 회의장에 배포하지 말고 다음 회의 전에……

○소위원장 이한성 그런데 변협의 대표자 말씀을 여기에 와서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진태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이한성 말씀하세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변협에 대해서 우리가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하는 것은?

○소위원장 이한성 우리가 반대 목소리도 들어보는 거지.

○김진태 위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체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거의 1시간 가까이 논의를 했는데……

○소위원장 이한성 워낙 큰 거잖아요.

○김진태 위원 우리 위원들 간에도 지금 크게 반대하는 기류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변협이 반대한다는 것을 주 이유로 해서 이렇게까지 조금만 더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법안을 그렇게 해 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다른 아주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우에도 그렇게 해 오지 않았잖아요.

○소위원장 이한성 지금 법무부에서 말씀하시니까.

○김진태 위원 조금만 들어보세요.

변협이 지금 구체적으로 왜 반대하는지조차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 이제 왜 반대하는지를 우리가 더 연구해서 다음에 논의하자? 이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한성 그런 뜻은 아니고……

○김진태 위원 그리고 법무부 입장도 그런 산업계 대다수는 긍정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더 들어봐야 된다, 이것은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김진태 위원님 말씀은 감사한데 워낙 사법의 한 근간에 해당되는 것이고, 물론 이상민 위원장님하고 다 계시지만 우리가 그리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래도 또 반대하는 목소리는 한 번 더 들어주고 가면 그분들도 덜 속상하거나 이해가 되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오늘 당장 결단 내리기는 좀 아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해철 위원 변협이 이야기한 대로 관할이라는 것을 법원이 하고 있지만 법원을 이용하고 있는 한 축에 국민이 있다면 또 그것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서 변호사단체 이야기를 듣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그냥 반대가 아니라 상세한 논거가 있어요, 변협 의견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자 이런 의견이어서 저는 지나침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법무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다 들어서 결정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위원분들이 기본취지는 거의 동의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짚어 보는 것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변협도 상세한 논거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미리 자료를 다른 위원들한테 좀 쥐 가지고 하든지…… 김진태 위원 말도 일용수공이 가는 게 본인들이 변협 차원에서 할 이야

기가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쟁점 법안인데 본인들이 주장할 게 있으면 자료라도…… 지난번에 보면 민간단체들도 다 하잖아요, 자료라도 입구에서 배포한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당장 들어보니까 법률을 떠나서 애국심에 호소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급한 것 같기도 한 게 있는데, 이것은 변호사회의 어떻게 보면 지연작전도 아니고……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을 조금 이야기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오늘 1소위 법안으로 우리가 처음 논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에서 법안이 서로 다 이야기가 돼서 올라온 2소위 법안이 아니라 1소위 법안인데 저희가 처음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 분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되게 급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게 집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원혜영 의원님의 취지가 ‘정말 다른 데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랬구나’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취지와 이 방법이 방안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특허법원을 확실히 특화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저기서 하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오히려 이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한승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라의 전체 취지 속에서 추진되어 나가면서 키워야 되고……

법원은 실제로 보니까 서울중앙지법에 90%가 거의 다 집중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건은 여지껏만 봐도 서울중앙지법에 거의 집중되어 있었고 지방에서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이 취지는 제가 보기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변호사회가 한다면 다른 취지가 있을 것 같고, 세 분의 위원님들이 말하는 특허의 중요한 부분은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좀 더 집중하고 관여하고 역량을 주면서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이 변호사회도 내가 보기에는 굳이 크게 반대한다 이것 같지는 않고 의견이 있고 오늘은 첫 회의였으니까 한 번 더 보는 것이 좋고, 여기서 더 보강하고 강화시켜 내는 것이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위원장 이한성 강남일 전문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제가 변협 의견과 관련해서 참고로 한 말씀을 올리면, 대한변협은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별도 의견을 냈는데 여기는 중복관할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변호사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대한변협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을 낸 것이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중복관할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성인 것 같습니다.

○홍일표 위원 대한변협의 반대의견도 공식적으로 반대하지만 반대의 강도나 이런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심한 반대는 아니다, 결사반대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김진태 위원 아무튼 직접 불러서 듣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아요.

○홍일표 위원 그리고 대한변협이, 물론 우리가 소비자이고 이용하는 법조의 한 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견을 잘 참고할 필요는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사법 운용에 관한 결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입법정책적인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거기에 너무 끌려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잘 유도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세계적인 법원으로 키우기 위해 저희들은 특허법원을 IP 허브 코트로 육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변호사회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변호사회가 표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실질은 변리사한테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이 돌아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변협회장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변호사회마다 입장이 다른데 그것 때문에 변협회장이 전체적으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협회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의견을 진술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알겠습니다.

저도 다 가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할까 결론은 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다만 그래도 중요한 한 축의 의견을 우리가 바로 첫 회의에서 결단 내는 것은 그래도 좀 민주적이지 못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강남일 전문위원하고 법무부 차관님이 다음 기회에 의견을 더 개진해 주시고 한 번 더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전체하에서 다음에는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전해철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김도읍 위원 차관님, 산업계에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도 미리 정리해서 배포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러면 1항에서 3항까지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4항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재주 의사일정 제4항 서기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수 축소 및 위원 구성 변경 내용인데요. 법안의 내용을 보시면 대략 어떤 내용인가 알 수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10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고, 선임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에서 제외하며, 비법조인 출신의 위원을 1명 증원하되 여성 위원의 최소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대법원장 임명제청권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선임대법관은 심사대상자가 재판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증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역시 심사대상자에 대한 법관 사회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의견인데, 선임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모두를 위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

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지 않고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실현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입니다.

1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수 축소는 10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자는 것인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중 ‘선임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을 삭제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아래 부분 설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나. 선임대법관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은 모두 대법관으로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그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같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더욱이 현행 법원조직법과 같이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모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한다면 그 수가 3명이 돼서 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이 수가 검찰이나 변호사협회, 교수 등 다른 직역 종사자에 비해서 3배나 많게 됩니다. 따라서 선임대법관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제외 내용입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대법원장의 의견에 반하는 견해를 개진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개정안의 의견이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들의 대표로서 후보자에 대한 법원 내부의 일반적인 평판 등을 대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으로 임명되면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피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법원행정처장 등과 다른 시각에서 후보자들을 평가하고 추천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선임대법관을 배제하는 것과 함께 대법관이 아닌 법관까지도 제외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라. 비법조인 위원의 증원 및 여성 위원 증원 내용입니다.

비법조인 출신의 위원을 1명 증원하는 것은 대법관후보 추천 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보

다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중 비법조인 인사의 비율을 높이다라도 법률전문가의 숫자가 지금도 5인으로서—각주를 보시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반수에 달하므로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있는 평가 및 법조 직역에서의 평판에 대한 의견 수렴은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비법조인 출신 여성 위원의 최소 인원을 2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여성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기회를 늘릴 뿐만 아니라 남성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후보자가 양성평등과 여성문제에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소결은 생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입니다.

20쪽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고요.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의도하는 바대로 위원회가 운영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과 같이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위원장을 통해 대법원장이 의도하는 바대로 운영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 동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동 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행정처장이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될 경우 역시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법관후보자의 추천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중립적 운영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22쪽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렇게 되면 후보자를 정상적으로 추천하는 데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고, 법무부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수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는 후보자 추천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고 후보자 검증도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검토의견은 의결정족수를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은 후보자 검증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소수의견을 가진 위원들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3쪽입니다.

심사대상자의 천거절차입니다.

23쪽 윗부분의 법안 내용을 봐 주시면, 현행 대법원 규칙에 규정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대상자의 천거절차 관련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천거의 상대방을 법원행정처장으로 변경하고 심사대상자 천거 시 피천거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심사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4쪽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천거행위의 상대방을 대법원장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중 1명인데 법원행정처장이 피천거인의 대법관 결격사유를 사전에 판단하고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를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법원행정처는 피천거인의 동의서 제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데 국민 등의 자유로운 천거를 가로막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천거절차에서부터 천거인과 피천거인의 긴밀한 관계를 요구함으로써 천거절차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심사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된다는 반대의견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고 있는데 심사대상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와 큰 차이 없습니다.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데, 천거행위의 상대방을 대법원장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자 추천 자체에 관여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피천거인의 동의서 제출을 찬성하는 이유는 대법관후보자가 되려는 인사로서도 자신을 지지하여 천거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심사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는데 심사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심사대상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는 겁니다.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 천거행위의 상대방을 대법원장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 변경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중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후보자의 추천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 위원회이며 그 직무수행에 있어 대법원장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개인·법인·단체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고 대법원장이 피천거인 가운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판단·선정하여 추천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이 지금 현행 제도인데 이걸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추천절차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자 추천 자체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므로 법원행정처장이 피천거인의 대법관 결격사유를 사전에 판단하고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를 제시하는 것은 이 또한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개인·법인·단체의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행위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을 상대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28쪽입니다.

나. 천거 시 피천거인의 동의서 요구 내용은 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자유로운 천거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지만 무분별한 천거를 예방하는 한편 본인은 대법관후보자로 제청할 의사가 없음에도 무익한 심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 심사대상자의 명단 공개 부분입니다.

심사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심사대상자들에 대하여 여론 수렴을 할 기회를 확보하고 부적절한 제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자 중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서 천거된 피천거인의 명단만을 개정안처럼 공개하는 경우 현재 대법원 규칙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천거한 피천거인과 대법원장이 제시한 심사대상자의 명단은 비공개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임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속기사분들이 제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 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좀 약합니다.

정부에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주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이 실질화되어서 국민들이 바라는 대법관을 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제안이유나 그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대법관을 선임하는 문제는 인사에 관한 사항이고 또 인사절차나 그런 것들이 잘 지켜져서 그로 인한 불편함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장 이외에 법원 내부 선임대법관이나 대법관 아닌 법관을 배제하는 문제는 법원이면 법관들이 대표적으로 가장 전문적인 직업이고 또 그 숫자도 상당히 많고, 또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법관들을 모두 배제하는 것이 과연 그런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원 내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아닐까 그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천거라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본 구조에 비추어 볼 때 법령체계나 이런 것들과의 관계나 그런

것도 같이 비추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전체 추천·천거하는 사람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인사 하게 되면 의사를 타진하고 동의서를 받고 검증을 해 보고 그런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데 비추어서 초기단계부터 모든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정도의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법원행정처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입장을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저희들 기본 입장은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대법원장 그리고 대통령·국회의 관여를 모두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에 있어서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조화롭게 관여함으로써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주권의 원리에 충실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헌법적 결단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런 취지를 살리면서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위원 과반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그 추천을 존중한 제청 등으로 이미 절차적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0명 중 6명은 당연직 위원이고 그밖에 대법관 아닌 법관 한 사람, 법조계 외부위원 3명이 위원으로 참가함으로써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임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배제하는 내용 반대합니다. 선임대법관과 대법관 아닌 법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선출 방식의 경우에 위원은 누구나 위원장이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기준으

로 해서 위원장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구성된 6회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모두 공무원이 아닌 비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촉되었습니다.

그리고 의결정족수 강화 부분도 일반적인 의결에 있어서 과반수를 하고 있지 3분의 2 같은 경우, 상법에 있어서 특히 가중요건 같은 경우에 3분의 2나 4분의 3을 요하는 경우는 있어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과반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분의 2도 반대로, 만약에 3분의 2로 간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양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소수자가 3분의 2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에 더 불리한 결과가 역설적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천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거를 법원행정처장에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외에 피천거인의 동의서 제출에도 반대하고, 심사위원 명단 공개도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서기호 위원 제가 먼저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당연히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갖고 있지만 기존의 대법관 추천 과정을 보면 대법원장의 재량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 추천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성에서부터 대법원장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는 선임대법관이라든가 대법관 아닌 법관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과반수 문제도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개정안의 취지는 전반적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하나하나씩 논의를 해 갔으면 좋겠고요.

자꾸 대법원장의 권한을 유지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계속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하나씩 하나씩 검토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 지금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여기 썬 대로 다 반대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만은 좀 더 전향적으로 봐서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일단 들고, 좀 아쉬움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취지가, 지금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상임위 때 수없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추천 절차, 천거 절차의 문제점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으신 분들이 응하지를 않는다, 또 할 만한 분들은 실제로 거절한다 등등의 사유가 사실은 구성의 다양화를 못 하는 논거로 이야기했었지 그 외에 별로 확실한 논거가 없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추천위원회라도 뭔가 법원에서 좀 고민해서 이런 안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저는 서기호 의원님이 발의한 이 법안 취지에 동의하니까 방금 제안자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하나를 보면서 가능성 여부를 그냥 따져 봤으면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태 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모든 걸 우리 헌법상 원칙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법관후보의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제청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우리 헌법에서 부여된 범위를 넘어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후보추천위원회라는 것을 해 놓고 그냥 대법원장 마음대로 제청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나오면 사실 그것은 또 추천위원회의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왕에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므로 좀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는 물론 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대법원장 제청권의 근본적인 수준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조문이 긴데, 우선 전반적으로 하고 축조 심의를 하겠습니다.

○서기호 위원 하나하나씩 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이한성 우선 기본적인 입장을 들어보지요.

○임내현 위원 원론적으로 원칙만 얘기를 한다면 그 두 가지가 조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넓힌다는 그런 전향적인 요구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 하셨습니까만 헌법적으로는 일단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걸 자의적으로 못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배제시키는 쪽으로만 가도 그렇고 또 그걸 무력화해서 하나 마나 한 것을 해서 여기서 어느 조항, 예를 들면 증원 및 여성 증원, 비법조인 위원의 증원이라거나 여성 위원 증원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저쪽을 법관을 다 배제해 버리고 3분의 2로 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정신에는 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한 분만 더 말씀 듣고.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김도읍 위원 우리가 상임위 하면서 참 끊임없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게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급기야 서기호 위원님이 이런 법률안을 발의했고.

차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법관들의 다양성이 확보돼 있다고 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다양성이라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출신 어디, 남녀 성별 이런 걸 따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가치관 내지는 이념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김도읍 위원 차장님, 그러면 물론 전문성이 다 있겠지만 지금 열세 분, 열네 분의 대법관분들의 공통분모를 뽑아 보면 상당히 많아요. 특정

재판부 출신이다, 특정 학교 출신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성 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저희가 상고법원 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저희들이 모시려고 하면……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1년에 대법원에서 1인당 한 3000건 이상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모시려고 하면 사실 책임자가 고사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양화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부장판사, 평판사부터 대법관을 시키기 위해서 대법관 후보군을 양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많은 격무도 감내하고 하겠다, 나선다 이겁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양성하고 있다……

○**김도읍 위원** 이 법은 저도 서기호 의원이 발의를 잘 하셨다고 보는데, 축조심사를 하면서 정말 법원행정처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 지적해 나가 봅시다.

○**소위원장 이한성** 다음 홍일표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김도읍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대법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너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판사 출신이고 법원 출신이고 편향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다양화해야 된다 하는 욕구가 많이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법원 내부의 실정은 실제로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숙련된 법기술자적인 측면이 없으면 대법관으로서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원 사건 처리를 전혀 안 하던 분이 와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어떤 헌법적 이슈나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그런 걸 가지고 고담준론(高談峻論)을 해 가면서 이렇게 논의해 볼 만한 여유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 모셔서 그런 사건은 못 하더라도 그러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다 기술적으로 하게 하고 현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추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어려움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이상과 욕구와

현실이 안 맞는 측면이 있다, 다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반드시 이것은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 구조개편도 꼭 필요하다……

저는 사실 이 법안은 상고법원을 한다면 반드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런 다양화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이 법안을 과연 어느 정도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모두 발언을 듣고 보니까 약간 대조가 됩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전 조문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오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마는 항목별로, 항별로……

○**김도읍 위원** 다음에……

○**전해철 위원** 아니, 해야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한 10분만 합시다.

○**전해철 위원** 아니, 하나씩 해야지요.

○**김도읍 위원** 축조심사 하기 시작하면 이것 오후 내내……

○**소위원장 이한성** 그러면 다음에 하자고요?

○**전해철 위원** 아니, 이걸 어떻게 다음에 해요. 테이블 밑에서 검토하자는 건데 당연히 해야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우선 하나하나 보고……

○**김도읍 위원** 질도 문제지만 양도 문제니까, 이것 지금 축조하면……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 이것 축조하면 2시에 속개하더라도 한 2~3시간은 족히 걸립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 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면 몰라도 일단 개별로 해야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오늘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렵기는 어렵지요.

○**전해철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다툼이 있거나 뭐가 있는……

○**소위원장 이한성** 그래도 한번 해 놓고 다음에 하고 그렇게 합시다.

○**서기호 위원** 시간을 정해 놓고 하면 되잖아요, 몇 시까지 한다 이렇게.

○**소위원장 이한성** 아니, 그건 아니고 짹짹하게 우선 해 놓고 또 다음에 한번…… 그렇게 회의한 적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줘야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그렇지요.

우선 1호.

3항만 개정안이지요? 41조의2제3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중에서 호별로 하는 거니까요, 축조.

○전해철 위원 2항, 3항.

○소위원장 이한성 1호는 삭제하자는 안인데……

○전문위원 임재주 41조의2에 2항하고 3항입니다.

2항은 위원 수를 10명에서 9명으로 줄이는……

○소위원장 이한성 1항은 유지가 되는 거고 2항은 10명에서 9명으로 줄인다는 견해가 되네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2항하고 3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렇지요. 그래서 우선 2항부터 짚막하게 분위기만 보고, 아마 이것 당장 결론 내리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호 위원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선임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2명이 빠지고 외부 위원이 1명 늘다 보니까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여기서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관 1명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관이 추천위원으로 임명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법관 1명을 임명하는 주체가 대법원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법원장은 자신의 의중을 충실히 따를 수 있는 법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 의견에 보면 그 법관 1명이 소신을 피력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빠져야 한다고 생각이 든 거고 굳이 만약 법관 1명을 넣는다고 하면 대법원장의 의중과 관계없이 그야말로 독립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이런 사람을 넣을 수는 있겠지요.

다만 그것은 입법기술상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판사회의 의장이라는 지위가 현재 그 법체계에 보면 규칙도 아니고 약간의 법원내규로 정해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예 그냥 법관 1명은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홍일표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는 딱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소위원장 이한성 그래도 조금씩 이야기해 놓고 나중에 전문위원이 정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홍일표 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의 비율을 좀 높여 보자 이런 것은 괜찮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법관 아닌 위원들 중에 여성 비율을 높이는 게 어려우면 전체 위원 중에 법관을 포함해서 여성 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는 정도는 좋은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도읍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대법원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아마 인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다양화의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조금 전에 김진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기속력이 있습니까, 후보 추천에?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자문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자문기구적 성격이 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만약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분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후보로 지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아마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자문기구의 성격상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청권은 대법원장님께 있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 헌법상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고 이 추천위원회는 자문기구이고 그래서 우리가 법사위, 특히 고유법 법안심사소위를 하는 데 대법원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모두 공감을 하지만 또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법 개정은 저희들이 알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이 위원회는 자문기구이고 그래

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기구에 맞는 성격의 틀 내에서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논의가 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먼저 제안해 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지금 취지도 위원님들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요. 다른 총리, 행정부 장관 제청하거나 할 때는 추천위원회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추천위원회를 법으로까지 했던 취지를 살려야 되거든요. 물론 이게 자문위원회니까 그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기속되지 않고 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권리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천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은 그만큼 대법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법원에서도 다 인정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 내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막중한 일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최소한의 참여를 보장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취지가 맞고요.

구체적으로 이걸 보면, 2호에 보면 법원행정처장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있는데 굳이 선임대법관이 있을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해서 선임대법관은 삭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에 대해서는 서기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이걸 이 법관이 적어도 단순 지명 임명이 아니라 법관 구성원분들을 대표나 대변할 수 있는 분의 절차적인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저는 이분 역시도, 그냥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또 하나의 그냥 한 분의 대법원장님의 중의 있는 분을 추천하는 의미지 않나 생각을 해서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 부분도 삭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했을 때 여성 위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문위원이 나중에 한번 봐 주시는데 여성 위원에 대한 비율이 다른 위원회 보면 상당 부분 가중돼 있는 데도 많이 있지요. 몇 명 이상 있기도 하고, 과반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 몇 개 위원회를 한번 봐 주시면, 해서 뒤에 적절하게 이야기한 대로 꼭 여성 대법관이 아니더라도 여성의 그런 시각을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됐으면 좋겠다, 이게 현재 제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임재주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법원조직법 제41

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7항을 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예, 호선도 당연히 지금 여기 의견 나온 대로 호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다른 분 의견이 없으면 오전 회의는 이걸로 하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진술을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축조도 대충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분위기로 봐서 의견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일단 오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2)(계속)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38)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19. 아동 살인 등 아동대상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 살인죄 등 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이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전해철 의원님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정부 제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5항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4건과 의사일정 제18항 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아동 살인 등 아동대상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의사일정 제20항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살인죄 등 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이상 17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6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 전체회의에 지금 회부가 안 된 것인데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쳐서 오늘 이렇게 의사일정에 합류시킨 것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 1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별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식명령 사건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폐지에 관한 안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중간쯤 보시면 쟁점들이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피고인을 법정구속 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방안이 하나 대안으로 제시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이런 논의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이건 지난번에 논의했으니까 다른 것 좀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른 걸로 넘어갈까요?

○전해철 위원 하나씩 하실 건가요, 즉 보고하고 하실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하면서 나가는 게……

○전해철 위원 이거는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그럼시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러면 9쪽입니다.

형집행정지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해철 의원님, 그리고 이목희 의원, 정청래 의원님, 그리고 김태원 의원안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첫째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전해철 의원안과 이목희 의원안이 있는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전해철 의원안은 집행정지 사유의 유무 또 집행정지의 연장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검사의 지휘 이전에 미리 심의하기 위해서 각 고등검찰청에 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목희 의원안은 현행법 제469조부터 제47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 사전에 형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 및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집행정지 사유의 유무 또 집행정지 연장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엄격하게 심사한다면 형집행정지 결정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대검찰청에서 2013년 7월 17일부터 자유형 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서 집행정지·연장·취소 결정 시 원칙적으로 각급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정지 사유 판단에 대한 의료기관의 제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목희 의원님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 그리고 김태원 의원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목희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 제471조 제1항제1호의 사유에 있어서는 의료법 제3조제2항 마목의 종합병원 중 두 곳 이상에서 일치된 진단을 받아야 하고 또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고, 정청래 의원안의 경우에도 유사한 내용인데 국립중앙의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고, 김태원 의원안도 거의 유사하게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지정된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하거나 또 종합병원 두 곳 이상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위진단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형집행정지 사유 판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형집행정지자 수용시설의 제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청래 의원과 김태원 의원이 법안을 제기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김태원 의원안의 경우에는 현행법 제470조제1항과 제471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형의 집행을 정지 받은 자를 수용할 장소를 법무부령으로 정한 곳에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정청래 의원안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법무부령으로 정한 곳에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집행정지자의 수용시설을 제한하는 경우는 도주를 예방하고 국민감정에 반하는 호화생활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형집행정지 허가에 관한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거나 또 형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될 경우 즉시 집행정지를 취소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형집행정지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거기까지?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소위원장 이한성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먼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고검 단위로 두거나 또는 법무부에 두는 안에 대해서 형집행정지 사건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거의 많은 사건의 경우에 생명이 위독해서 긴급한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비추어 보면 먼 거리에 있거나 또는 일률적으로 모두 사전에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현재 대검찰청에서 예규를 개정해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급박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후 심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병원 등에서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경우는 종합병원의 숫자가 적고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이 돼 있어서 진단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형집행정지는 말씀드린 대로 급박한 경우 또 심각한 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독일이나 일본 등에서도 진단병원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집행정지자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병원 등에 제한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형집행정지의 대상이 된 병종이나 또는 증세 그런 것들이 다양할 수 있어서 그것을 모두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 참고로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시설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입법목적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달성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절차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거나 정지 사유 소멸 시 즉시 집행정지를 취소하는 등의 것들도 대검찰청에 예규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법률에 굳이 규정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영이나 예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다 했어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소위원장 이한성 대법원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형집행정지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이야기할까요?

법무부 차관님.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전해철 위원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대검 지침으로 해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긴박한 경우에 사후 심의인데 비율이 어떨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실제로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던데?

○법무부차관 김주현 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주 급한 사정이 되면 거칠 수가 없으니까……

○전해철 위원 비율에 대한 통계는 없어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부득이 사후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면 사후에 해서, 만약 사후에 안 되면 정지됐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수행하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나 그런 것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잘 없습니다. 보고된 바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일단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급박한 경우에는 사후 심의를 하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설치하고 급박할 때는 사후 심의하는 것으로……

현재 대검찰청 지침에 따른 사후 심의규정을 두는 것은 저도 좋겠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지침에 의해서 하지 말고 법으로 해서, 그동안 사실은 자유형 집행정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전해철 위원 그래서 엄격해지기도 하고, 실제로 어찌 보면 또 과도하게 비난을 받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전해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법률로 격상해서 하자 이런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서 사후 심의를 가능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태 위원 형집행정지에 대해서 이런 법들이 올라와 있는데 일견 보면 저는 형집행정지를 옛날에 많이 해 본 사람으로서 뭐랄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20년 전에 의성지청 검사를 했는데 검사는 혼자 앉아 있고 4개의 교정시설이 있어요. 거기 지금도 그렇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김진태 위원 청송 1·2교도소하고 1·2감호소가 있어서 계속 형집행정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걸 정말 운영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담당검사가 앉아서 내가 정말 속아서 안 된다 또 한 쪽 측면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붙들어 댕서

는 안 된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지요? 전에 영남제분인가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뭐 하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 하나 터지면 달려들어 가지고 법을 뜯어고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법은 그냥 누더기처럼 되고, 그리고 고치면 당장은 뭐가 좀 시원한데 그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꼭 또 우리가 대가로 치러야 되는 겁니다.

정지심의위원회 이게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왜 법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판단하는 의료기관을 최소한 두 곳 이상 진단을 받도록 한다? 글썬요, 나는 이것도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객관성·공정성이 얼마나 담보될는지 몰라도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나오는 사람은 또 어디다가 제한을 해서 둔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서기호 위원님.

○서기호 위원 형집행정지를 검사 개인의 의지와 성실성에만 맡기기에는,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요청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안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검찰청에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법에 규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영남제분 사건에서도 보면 허위진단서를 받아 가지고 할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형집행정지를 받아낼 정도의 사안인데,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아까 심의위원회 부분은 어떠세요, 차관님?

○법무부차관 김주현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고검 단위로 해 갖고는 각 지검에서 있는 수요를 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청 단위에서도 수용시설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청 단위에서는 지청 검사들이 가서 보고 본청에 보고를 하고, 검사장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최종결정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그런 바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해당 위원이나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의 구성에 참여하게 되는 의사나 또 확인 절차,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지역단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크게 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걸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수용시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신속하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정하고 정확하게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법률에 규정을 해서 하시게 되면 탄력적으로 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사안이 발생한 지역하고 집행정지를 판단하는 지역이 다릅니다, 수용되어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큰 시설을 운영한다거나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작은 지역에서 진단서를 받거나 했을 때 의심의 여지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형집행에 관한 실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하게 되는 경우에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로 걱정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지금도 지침에 따라서 지검 단위로 하고 있으면 지청의 것은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지 않을까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지청의 것은 지청 검사가 보고 본청에 보고를 해서 본청에서 정리를 합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등으로 하는 것도 고등으로 했을 때 아까 이야기가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지역에 멀리 있는, 보고에 문제가 있다 했는데 지검으로 하더라도 지청에 대한 것은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검으로 통할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러니까 고검 단위로 넓히게 되면 그게 굉장히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지검 단위로 좁혀서 운영을 하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분들, 지역의 의사나 또는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거의 현행이랑 같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검사장의 형집행에

관한 권한 행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는 지금 현재 영이나 예규로서 상당 부분 갖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관께서 이야기 하는 것은 고검 단위로 했을 때 거기가 넓어서 이동이나 또 위원 구성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는 지검으로 하더라도 물론 그 불편함은 좀 더 적겠지만 여전히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지검 단위에서 다 하는 건 어때요, 법으로 해서? 왜 자꾸 이걸 지침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현재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전에는 검사 개인이 하던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대검의 지침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전해철 위원** 그래서 기왕에 그런 지침을 했으면 법으로 격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도 높이고 투명하고 낫지 않을까요? 그걸 굳이 이렇게 법무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니까?

○**법무부차관 김주현** 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이나 그런 것들을 법률에 두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집행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1항 이외에 2·3·4항에 대해서, 병원이 어찌고저찌고 하는 이것은 또 따로 논의하더라도 일단 설치근거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재 하고 있는 지검 단위에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지검 단위에 설치하는 것에 근거를 만들어서 해 보자 이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러면 근거를 법률에 두셔도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형집행정지에 있어서 최근에 문제가 된 것도 그렇고 지금 통상 보면,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보면 급박한 상황, 돌발상황에 있어서는 수용자의 상태를 보면 생명이 위독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육안으로도, 비의료인이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병이 악화되어 가지고 형집행정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병이 있는 분들은 집행정지 심의할 때

자료를 보면 그간의 진료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쪽 연혁적으로 붙어 가지고 투약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그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심의합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전해철 위원님께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승격시켜서 하는 데는 저도 찬성을 하고 싶고요.

다만 그 시행을 함에 있어서는 법무부령으로 하는데, 여기에 좋은 안도 있는데 ‘진단서를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아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경제력도 있고 형집행정지를 위해서 국가가 지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심의 위원회에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의료인, 특히 종합병원에 있는 원로 의료인이나 이런 분들이 되겠지요. 진료기록이나 진단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 그분들이, 지금은 검찰청 사정에 따라서 개원해 있는 내과 의사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각종 질병·질환에 대해서 다 심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종합병원장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대신 질환이나 질병에 따라서 전문의들이 대동하거나 아니면 대리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운영의 묘는 법무부에서 잘 챙겨 봐야 되겠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의견이 대체로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태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이한성** 김진태 위원님 우선 말씀하십시오.

○**김진태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게 꼭 좋은 거예요? 나는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형집행정지가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해서 거기서 여러 명이 투표해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다수결로?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결국 검사장의 형집행에 관한 결정, 그것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김진태 위원** 이것은 자문기구예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서 형집행정지 결정에 필요한 심의를 하는 것이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그냥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태 위원** 그런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형집행정지 결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김진태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형집행에 관한 걸 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우리 형소법 체계랑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검사장의 결정을 자문하는,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는 것이 행정처분을 위한 위원회 설정이라서 지나치다, 과잉입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것이지요.

○**김진태 위원** 그러니까 내 말도 그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는데 심의인지 자문인지 아무튼 옆에서 도와주는 기관이 생긴 것부터가 검찰로서는 사실 그다지 명예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요?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에게 그만한 책임과 권한을 줬으니까 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고가 하나 터져서 지금 이렇게까지, 옆에서 민간인들까지 와 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법에까지 넣어야 되느냐. 위원회, 위원회 우리가 수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봤습니까? 모든 사람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닌 거예요. 위원회만 만든다고 능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금 지침으로 하고 있다는데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거를 굳이 법으로 승격시키면 이게 더 투명화되고 뭐가 어떻게 잘된다? 나는 그런 생각 자체에 의문을 표합니다. 심의·자문기구라고 하면 그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침을 정해서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위원장 이한성**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고견도 우리가 충분히 경청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검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검사의 결정권을, 주임검사가 다 결정할 텐데 이런 것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거는 두고 탄력성을 부여하는 절충안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그런 안을 제시해 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인데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제 생각에는 심의위원회 같은 걸 뒤서 신중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위원회의 성격을 의결기관으로, 결정하는 기관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그런 절차를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렇게 하고.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을 하나……

○**소위원장 이한성** 서영교 위원님 고견을 말씀하십시오.

○**서영교 위원** 저희가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국정감사 때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당시에 이대생 청부살인 영남제분 사모님의 형집행정지, 알고 보니까 영남제분 사모님은 형집행정지를 몇 번이나 받았고 연대 특실에서 자유롭게 잘 지내시더라, 그 사건이 세상을 한번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 제공을 저희 방에서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2580’에 나가면서 형집행정지에 관한 이야기가 이슈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연대의사 같은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진단을 내렸던 것이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홉 번째 형집행정지를 받고 있어서 그분은 형이 5년인가 그런데 아직도 그 형이 만기가 안 됐어요. 만료가 안 되고 그 외에 그러한 형집행정지가 사실 문제가 있으면서 법무부에 저희가 그 자료를 구하는 데, 법무부 일을 방해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했었는데……

그래서 그 시기 즈음해서, 형집행정지가 남용돼서도 안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도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사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철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것은…… 지금 갑자기 이야기 흐름이 법무부의 업무를 방해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견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도 의도적으로 나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 사례가 여러 번에 걸쳐 있었고 국민의 공분을 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지가 필요한데 그 눈은 일반 위원회 형태든 감시의 카메라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취지에서 그때 진행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전해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해철 위원** 위원장님이 정리하셨지만, 그러니까 법무부나 수석전문위원이 이것의 근거 법을 두는 대신 운영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안을 내 가지고 한번 정리해 줘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감시의 눈이 되어야 된다……

○소위원장 이한성 잘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법무부도 그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발의한 의원님들의 뜻도 반영이 되면서 법무부의 현실적인 실무 관행이 존중되는 타협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형집행정지자 수용시설의 제한 등까지 전부 다 시행세칙에 넣는 걸로 해서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검사의 상고권 확대에 대한 검토보고를 수석전문위원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검사의 상고권 확대 관련 부분입니다. 이한성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20쪽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현행법 제383조 각 호의 상고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고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2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상고권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상소에 관한 통칙의 장 제338조에서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언대로 해석하면 검사가 383조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상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제383조4호를 이유로 하는 검사의 상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961년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최후의 구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이유로서는 상고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1962년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검사의 상고 제한 문제는 사실인정 또는 양형에 대한 법관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이익한 형 변경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현행과 같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정부에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주현 지금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의 문면 문언의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검사의 상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고요. 또 1961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상고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 당시의 입법취지가 검사의 상고권을 제한하는 것을 의도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대법원에서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형사소송법 383조4호의 해석 문제인데요, 결국 그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서 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고심의 성격이 사후심 내지는 법률심이기에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양형의 현저한 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다 이 취지는 오로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법원 관례의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검사에게 양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입법례적으로 보더라도 형이 가볍다는 사유를 이유로 상고이유를 인정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위원님들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차장님, 형이 가볍다고 검사가 상고하는 예는 없다고 한 것은 못 하게 하니 판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아닙니다. 입법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도읍 위원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다고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김도읍 위원 그래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양형부당이 예외적으로 상고심에서 파기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듀프로세스(Due Process)에 위배해서 피고인에게 과도한 형벌이라는 이유로 인정되는 것일 뿐이고 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인정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

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것 어디 자료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저희들 검토자료입니다.

○**김도읍 위원** 입법례가 없다는 겁니까?

법무부는 어때요, 과장님?

○**법무부형사법제과장 김태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입법례는 미국 입법례를 따를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 주마다 물론 다른데 그냥 검사가 기소해 왔다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그대로 확정시켜 주고 불리하면 그 권리는 얼마든지 인정해 주고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해 왔다가 무죄 받으면 그걸로 그쳐 버리고 피고인이 유죄가 되면 한 없이 항소·상고할 수 있고 이렇게 될 때가 많고, 이중위험금지원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많아 가지고 그렇고, 배심제도라든지 지금 우리가 따라가다 얼마나 실패를 많이 봅니까? 미국 제도는 특히 흑인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불평등한 사법제도라고 아주 악명이 높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제도는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기호 위원** 원래 상고에서는 사실인정이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나, 양형부당의 경우에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안 되는 것을 예외적으로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까지 검사의 상고를 인정해 버리면 그 예외조항을 둔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상고이유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워낙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한번 더 기회를 준다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상고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게, 제 생각에는 현행법 체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상고권을 확대하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상고심이, 대법원이 법률심화 돼야 된 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법원의 법률심화라는 큰 방향에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도읍 위원** 행정처 차장님, 이것은 아마 법무·검찰이나 법원행정, 대법원이나 마찬가지로 일 것 같은데 피고인의 인권이나 피고인의 이익이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저희들이 늘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가 피고인 인권, 피고인 인권 찾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는 없어요, 피해자가 없다고. 피해자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형사법에 있어서 개인적 범익이 침해되는 범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범익이나 국가적 범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김도읍 위원** 그러면 사회적 범익이나 국가적 범익이 침해되었을 때 양형상 심히 부당하다고 할 때 누가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고 항변할 것이냐? 차장님, 어떻습니까? 법원 판결이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 한다는 당위가 있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소송법에도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이라든지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뒤에 국가적 범익이나 사회적 범익이 침해되었을 때 법원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구제를 하느냐고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아마 그런 경우 심히 부당하다고 하는 판결은 잘 선고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적 범익이나 그런 중대한 범익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이 분야에 식견이 탁월하신 서영교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저는 이야기가 팽팽한 것을 보니 한참 더 이야기한 후에 보강해서 다음에 하자 이렇게 결정될 것 같아서 그 정도를 보고……

○**소위원장 이한성** 알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논의를 하고……

홍일표 위원님.

○**홍일표 위원** 전문위원, 마지막 부분 이게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충돌되는 면이 있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일표 위원** 22쪽 마지막 부분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아니에요?

○**서기호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관계없이 불이익한 형 변경을 감수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나 이런 입법정책적 판단의 차원에서 전문위원님이 쓰신 것 같은데요.

○**홍일표 위원**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는 관계가 없이?

○**서기호 위원** 예, 만약에 검사의 상고를 허가한다고 했을 때 검사가 상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을 안 받으니까요.

○**홍일표 위원** 대체로 불이익변경금지를 도입한 취지에 반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 이런 취지가 포함된 게 아닌가……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약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주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법무부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주현** 제가 아까 문언의 해석상 검사의 상고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데, 대법원에서 이제까지의 해석으로 검사 상고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양형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양형이 생각보다 지나치게 덜 나왔다 그래서 사회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급심에서 항소심까지 결론을 내렸지만 그 양형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는 사건들이 있다면 검사가 그에 따라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고를 해서……

지금 사형, 무기, 10년 이상 선고되는 사건의 숫자가 연간 몇 건 안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 주셔야 그런 사회적인 논란이 잠재워질 수 있다, 그런 측면도 논의를 하실 때 같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일응 서기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형의 양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피고인이 불이익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논의하자는 것에는 찬성하는데 다만 입법례에 대해서는 약간 다툼이 있고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법무부도 거기에 맞게 더 입법례를 찾아 와서 법원이 하는 것하고 같이 견주어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보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조금 통일되지 못하고 있고 마침 전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 입법례를 찾아 본 뒤에 결론을 내리도록, 이 안건은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개정안하고 제12항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개정안 2개는 재심사유 확대 문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11항과 12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현행법의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인정하고 있는데 김승남 의원안과 이종걸 의원안의 경우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된 경우에도 재심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소심에서 피고인이 사망해서 공소기각된 경우에도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견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심제도의 취지나 피고인 사망 외의 사유로 공소기각된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주현** 재심은 확정판결의 오류를 시정하는 비상적인 절차인데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까지 재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심제도의 취지와 배치되고 다른 이유로 공소기각이 결정된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대법원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저희 의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선 공소기각 결정은 형식재판입니다. 공소기각 결정을 하면 1심의 유죄판결은 그대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공소기각 결정 자체에 재심사유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심을 허용하는 것은 재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을 때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상소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과도 맞추어 보면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허용하자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여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차장님, 우리가 재심을 하는 이유는 재판이 확정되고 나서 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에 재심을 허용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피고인이 상소 중에 사망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상소 중에 사망하더라도, 만약 항소 중에 공소기각이 되더라도 1심은 1심으로서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아닙니다. 1심의 유죄판결은 그대로 효력을 상실하는……

○김도읍 위원 상실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 뒤에 다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공소기각 결정 자체에 재심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공소기각 결정 자체에 재심사유를 찾기 어려울 거라는 말씀입니다.

○김도읍 위원 결국 재심의 기본적인 취지는 무죄를 다룰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하는 것이 재심제도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상소 중에 사망한 것은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김도읍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다음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법안을 설명할 때 현행법이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 게 제도의 기본 골격 같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났다 하더라도 사망하고 그러면 실질·실체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형식적 판단을 해서 원래 유죄판결도 효력이 없어지고 그런 문제인데……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그렇습니다.

○임내현 위원 이것이 말씀대로 그 자체가 무슨 재심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게 형식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다시 재심으로 다룬다는 게 논리적으로 좀 안 맞을 것 같네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임내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유죄판단을 못 하는데 사안을 밝혀 보자는 얘기하고 비슷한 것이 돼서 이게 논리 구조상 지금 형사제도의 흐름으로 봐서 유죄 확정판결을 전제로 그것을 다루는 의미의 재심이 맞지 그 사람이 사망을 해 버려 가지고 실질적 판단 자체가 효력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재심을 논의한다는 것이 기존 구조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개정은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영교 위원 지금 하신 말씀들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법안을 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보고 나중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이게 양쪽에서 나왔을 테니 그것을 나중에 좀 더 보면서, 지금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서기호 위원 그런데 이 법 개정안의 취지가 원래 재심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건데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항소심에서 사망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항소심에서 또는 다른 증거가 발견돼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확정은 안 됐는데 사망해서 더 이상 다투지 못하다 보니까 1심 유죄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상당히 불명예를 안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준해서 재심을 하자는 취지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이 개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선고된 이것이 계속 남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로 인한 가족들의 불이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가족들은 공소기각 돼서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이한성 자, 홍일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일표 위원** 지금 논리가 항소심에서 공소를 기각하면 1심에서의 공소 자체가 효력이 없어진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유죄판결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홍일표 위원** 유죄판결의 효력이…… 그러니까 소급적으로 공소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결국?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서 논리적으로 재심사유에다가 별도로 또 규정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도 안 되겠지요. 이렇게 하려면 재심사유부터 다시 정해야 되겠지요, 이런 별도의 예외적인 경우는 재심이 가능하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그렇습니다. 공소 기각 결정 자체에 재심사유가 있는지 그것부터 따져야 됩니다.

○**홍일표 위원** 재심사유 대상은, 유죄 확정판결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항소심에 가서 공소기각된 경우는 재심할 수 있다 이것은 서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실 항소심에 가서 공소기각 됐을 때 1심의 유죄판결이 취소된다는 무슨 선언은 없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마치 어떤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씻기가 어렵다 하는 차원에서……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그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홍일표 위원** 제기되는 것이어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논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네요.

○**임내현 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의문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완해서 제 견해를 밝힌다면, 재심이라는 것은 유죄 확정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다루는 거고 그런 문제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이나 법원의 면소판결이랄지 공소기각 판결 결정에 나오는 문제예요.

그런데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재심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도 당사자가 원한다면 혐의 유무를 밝히는 무슨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 재심이란 것은 이미 유죄판결, 어떤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형식 판단으로 끝나 버릴 수 있는 것을 그런 억울함이 없게 하려면 현재 검찰의 주문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가 원한다면 혐의 유무를 밝히는 그런 특수한 제도를 보장하는 것이지 재심으로 갈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이것은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이것은 사법제도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고 논리체계를 혼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삭제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지금 이 건하고 의사일정 제95항 서기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삭제입니다.

이 부분 법안의 내용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가 현행법 제101조제3항의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해서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서기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2쪽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의 경우에는 서기호 의원안과 김진태 의원안이 많이 같고요. 두 번째,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은 서기호 의원님께서만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명시적 판단이 없지만 검사의 즉시항고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음에도 석방되지 못하고 계속 구속돼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는 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다 하신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것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했어요.

다만 서기호 의원안에는 이와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있는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순서적으로.

○소위원장 이한성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마친 것으로 하고,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주현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구속집행정지 결정과는 달리 사유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할 만한 조건을 부과할 수도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구속취소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속집행정지 사유라는 것은 부모의 장래 참석이라거나 그런 한시적인 것들이라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는 사유가 대부분인데, 구속취소는 그냥 그 자체가 종국적인 신병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결정이 여기에도 그냥 유효하다 그렇게 보기 어렵고 더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석방 결정에서도 주 방지를 하기 위해 석방금지 가처분제도도 두고 있는 그런 점도 같이 보셔야 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대법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저희들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 없고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차관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즉시항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김도읍 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즉시항고를 인정하되 즉시항고에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하나까 법무부에서도 예를 들어 즉시항고에 대해서 어차피 즉시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영장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반한다고 나오니까 대안을 마련해 갖고 다음 회의 때 같이 의논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다른 위원님……

예,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대안도 마련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아직 잘 고민하지 않은 모양이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저희는 구속취소는……

○전해철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없애야 된다’라고 현재가 판단했지만 몇 가지 대안이 있잖아요. 그 대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제시할 것이냐 이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법무부차관 김주현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안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구속취소……

○전해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속취소는 지금 반대한다는 거고 즉시항고를 놔둔다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전해철 위원 그런데 정지에 대해서도 지금 찬성하지만 김도읍 위원님 안은 이 정지를 즉시항고를 안 하는 대신 다음에 다른 제도적 대안 마련도 해 보자고 이야기했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그 해 보자고 한 것에 대해서 현재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느냐 이게 제 질문이라니까.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그것을 같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검토하고요. 그 전제를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말씀이고, 법무부 의견에 저는 찬성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문제가 있다 해서 위헌을 했는데 이것을 취소하고 구별을 해야 된다, 다르다라는 전문위원 의견과 다르게 했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논거가 위헌을 했던 것이 영장주의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전해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다르게 봐야 되나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아까 취소하고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상 검찰의 필요성이지 이게 법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주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집행정지 결정은 사유가 한시적인 것들이 대부분인데 구속취소는 그 사유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속취소를 종국적으로 결정하시는 거고, 둘째는 출석을 보장하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취소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에서의 신병을 풀었다가 나중에 취소하거나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석방 결정을 하면 검사가 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하고 동시에 석방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병을 종국적으로 푸는 경우에는 일단 구속되어 있던 구속의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존에 검사가 즉시항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결정만으로 구속취소까지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게 저희들의 해석입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 프랑스 예를 들었는데 석방에 대해서 가처분 청구를 한다 이랬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김도읍 위원** 이럴 때 가처분 청구를 하게 되면…… 김 과장이 실무자입니까? 가처분 청구를 하게 되면 석방이 안 되고 구금이 계속되는 겁니까, 석방된 상태에서 가처분 하는 겁니까?

○**법무부형사법제과장 김태우** 석방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구금을 하게 됩니다.

○**김도읍 위원** 프랑스는 석방이 안 된 상태에서?

○**법무부형사법제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의 판단보다 검사의 청구가 우선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더라도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는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명시적 판단이 없지만 집행정지하고 달리 볼 바 없다 이거 아닙니까. 수석님,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사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하다 그러면, 물론 보통항고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즉시항고를 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대륙법 계통으로 입법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요.

○**소위원장 이한성**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법무부 차관께서 그 차이점을 둔 것은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구속집행정지라는 것은 일시적 사유로 했다가 나중에 도로 구속시키는 것이니까 우선 법원의 결정대로 따르더라도 나중에 일시적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신병확보를 하는 것이고, 구속취소는 종국적으로 구속을 해제해 버리니까 이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봤을 때는 결론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네요.

○**소위원장 이한성**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그것을 제가 발의했는데 제가 그렇게 대단한 걸 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현재에서 결정을 내려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형사소송법 101조하고 482조, 앞뒤로 그렇게 두 가지 각각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낸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서기호 위원님이 내신 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더 검토해 봐야 돼요. 집행정지나 취소나 하는 김에 이것도 같이 짝 정리가 되면 물론 좋겠지만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다른 겁니다. 다른 제도예요, 현재 결정도 없고. 그것은 다시 처음부터 검토가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렵게 냈던……

우리가 늘 지적하잖아요. 이렇게 됐는데도 빨리빨리 법 정비가 안 돼서 그대로 남아 있어서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낸 것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없는 것은 빨리 통과해 주기를 촉구드립니다.

○**홍일표 위원** 서기호 위원님은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서기호 위원** 제가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배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선 현재 결정에 구속취소 부분이 없는 것은 구속취소에 관해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 소송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26쪽의 하단에 있는데요 근본적인 이유가 그겁니다. ‘법원의 구속 또는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의 불복이 있다고 해서 좌우받으면 영장주의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취소나 구속집행정지나 똑같은 거거든요.

구속집행정지와 취소 두 가지의 사유가 다르다, 하나는 한시적이고 하나는 영구적이고 이런 차이로 두 가지가 다른 것은 맞습니다만 두 가지 다 공통적인 것은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이것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사의 불복을 더 우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영장주의가 위반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효력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구속취소 결정이 정당했는데 검사가 즉시항고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의 효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피고인으로서도 굉장히 억울해져 버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다면 일단 구속취소 결정에 따른 석방을 시키고 그다음에 별도의 어떤 조치를 하거나,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2항으로 나와 있는 그 대안에 따라서 어떤 집행정지 효력만 배제시키고 별도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대안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법무부하고 한번 논의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본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가 1항에 나와 있는 대로 영장주의 위반, 그다음에 적법절차 원칙 위반, 중대한 헌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헌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나 취소나 똑같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제가 차관께 이게 뭐가 틀리느냐 질문했던 게 그런 취지인데요. 차관이 이야기했던 한시적인 거나 이런 것은 실제로 그 제도가 틀린 거지요, 집행정지와 취소가. 그것을 설명한 거고.

현재가 위헌을 했던 이유를 보면 가장 큰 게 영장주의 원칙의 위반이거든요. 그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전제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피고인의 구속 또는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의 불복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해석하는 게 구속의 정지와 구속의 취소를 달리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지와 취소의 사유는 당연히 틀리지요. 그렇지만 현재에서 말했던 것은 영장주의 원칙이 관철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그런 전제로 본다면 정지와 취소를 구별할 이유를 저는 못 찾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다만 아까 김도읍 위원님이 여러 가지 대안까지도 다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 다 하면서 이것을 한 번 더 같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헌에 대해서, 위헌 결정된 것은 굉장히 빨리 입법을 해야 되고 개정해야 되는 것에는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할 때 다른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더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차제에 이것은 같이 해서 아까 김도읍 위원님이 했던 대안, 그리고 더더군다나 같은 취지에 있는 취소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함께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논의가 거듭될수록 저희들이 해법을 찾아가는 길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차관님, 전해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속집행정지에만 나오고 구속취소에서는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통상 구속집행정지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상정됩니까?

○**법무부차관 김주현** 법률에 사유들이 규정되어 있고요.

○**김도읍 위원** 통상 부모상이라든지……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가 있고요.

○**김도읍 위원** 또 간단한 질병이나 직계비속 혼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단기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김도읍 위원** 그러면 어차피 기간을 정해 놓고 집행정지를 하는 것이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구속집행이 되는 건데 구속취소 결정을 해 버리면 이제 그 결정을 번복할 방법은 보통항고밖에 없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김도읍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김진태 위원이나 전해철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하면서도 즉시항고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기간에 하는 건데 즉시항고의 효력은 그냥 법원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정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고해 가지고 결정을 받는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기간이 결국 가게 되는 이런 거고.

취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통항고 하는 방법밖에 없고, 만약 그때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거나 이럴 때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집행정지하고 구속취소하고는 이론에 있어서도, 아니면 대안을 찾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정지에 대해서 저도 일견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볼 때는 대안을 찾을 수 있겠다고 그랬는데 단기간 집행정지 하는 것에 대해서 즉시항고의 효력을 배제시키고 항고절차만 진행한다면 이러면 저도 딱히 대안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실무과장한테도 물어보니까 대안은 없다고 그러니까 김진태 안은 일단 통과하고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다시 재논의를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김진태 위원** 뭘 자꾸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도 이것 하나 무슨 실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의안번호 이렇게 와서 여러 명

의 의원들이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의사 일정 5번부터 죽 나와 있잖아요. 죽 나와 있으니까 그중에 한 건 한 건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 설명 드렸잖아요. 저는 101조하고 482조를 얘기한 거예요. 그중에 특히 101조는 서기호 위원님도 똑같은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취소하고 하자는 것은 구속집행정지하고 구속취소하고 구속의 두 글자가 같으니까 같이 하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제도이고.

지금 딱 형사소송법 중에 101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개정안을 냈다 그러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법안을 이번에 한 번 개정하고 한두 달 뒤에 또 개정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는 기다렸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조항이 여러 개거든요, 여러 개.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고.

○**소위원장 이한성** 예, 알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정지나 취소가 영장주의에서 비슷한 것 아니냐, 이것도 현재에서 같이 논의됐으면 그것도 같이 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지금 현재 결정문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지요. 당연히 이것은 집행정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유가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 결정 이유에 나오잖아요. 구속집행정지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인데 즉시항고를 해 가지고 그 짧은 기간을 또 정지시키면, 법원의 결정을 정지시키면 그게 시기를 놓치게 되면 피고인에게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게 현재 결정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하고 구속취소하고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기호 위원** 현재 2항에 나와 있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위헌의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를 나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집행정지가 취소하고 다르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 결국 1항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속 또는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의 불복에 좌우돼서

는 안 된다, 영장주의 위반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법을 개정할 때 그 조항이 정말 시급하다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것들보다 우선해서 따로 처리해야 되지 만 지금 현재 결정에 의해서 위헌이 된 부분은 사실상 검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검찰이 알고 있으면 어차피 즉시향고는 안 할 테고 그러면 사실상 이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국민들에게 당장 해를 끼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왕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 가지들을 다 해 가지고 위원회 대안으로 한꺼번에 합의된 것 위주로 해서 통과되는 게 맞지 않느냐……

○소위원장 이한성 어차피 지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하기가 굉장히 머리 아플 텐데, 이게 지금 하도 안이 많아 가지고 나중에 6월 본회의 직전에 정리를 해서 해야 될 텐데 그때까지 우선 김진태 의원안, 단독안 그것은 우리가 가납하는 것으로 거의 의견 일치로 봤습니다. 그런데 서기호 의원님 안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하고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한꺼번에 같이 해요.

○소위원장 이한성 그 정도 마치고, 홍일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일표 위원 그래서 지금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는 거고 삭제하는 김에 취소까지 삭제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들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의견 일치로 봤어도 형사소송법으로 다른 법률안들이 똑같은 게 죽 있으면 같이 합쳐서 가능한 것만 또 해야지 이것만 달랑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만일 오늘 논의에서 이것만 논의가 일치되고 나머지는 다 이의가 있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죽 해 보고, 이것은 하여간 이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전해철 위원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같이 하자는 게 그렇게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이야기한 대로 현재의 판결이 있으니까 정지에 대해서는 자명한 것이고, 취소는 틀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겁니다, 의견이 있는 거예요.

○김진태 위원 취소는 틀리다는 것은 나쁘게 애

기하자는 거예요.

○전해철 위원 들어보세요. 들으시라고, 말할 때는. 저도 잘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2개가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 현재 취지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법을 개정할 때 이 조문과……

○김진태 위원 이렇게 좀 감정을 신지 말고 얘기하세요.

○전해철 위원 김진태 위원이 말을 할 때는 내가 잘 듣고 있는데…… 말 끝나고 이야기하시라니까. 어떤 이야기라도 다 듣고 있어요.

○김진태 위원 뭘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상대방 위원 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전해철 위원 김 위원.

김 위원이 지금까지 말한 걸 들어봐, 말한 걸!

○김진태 위원 인상 좀 풀고 얘기하세요!

○전해철 위원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김 위원이 그렇게 한다니까, 말투가.

○김진태 위원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툭툭 끼어들어 가지고.

○전해철 위원 툭툭 끼어?

○홍일표 위원 좀 쉬었다 하시지요.

○전해철 위원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툭툭 끼어’가 어디다 쓰는 거야!

○김진태 위원 목소리 크면 다인가.

○소위원장 이한성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한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신상발언 좀 간단하게.

○소위원장 이한성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태 위원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공개회의 석상에서 아무리 다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19대 국회에서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하고 만 3년 넘게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고 일해 오지 않았습니까. 뭘 그렇게 굳이 언성을 높이고 일어나서, 가뜩이나 시간도 부족한 데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 여기 배석한 공무원들 보기에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서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주시고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제가 중재를 어떻게……

○전해철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소위원장 이한성 말씀하십시오.

○전해철 위원 김진태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하루 이틀이 아니고 1·2년 2·3년이 됐는데 제가 늘 상임위에서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이야기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말을 하는 습관이나 또는 자기가 늘 해 오던 게 있다 하더라도 한 번 짚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제가 늘 화를 내는 것은 어느 경우냐 하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늘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회 문제나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내가 발의한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이유가 말을 할 때 제지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커지거든요. 끝나고 나서 제가 이야기할 때는 들어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또 제지하고 그러다가 언사가……

예를 들어서 김진태 위원 나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막소리를 안 하는데 ‘톡톡 깎다’ 이런 이야기들은 같은 나이에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약간 화를 냈는데, 당연히 김진태 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동의하지요. 본질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야기하는 것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 서로가 자제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합시다.

○소위원장 이한성 김진태 위원님도 관대하시고, 훌륭한 인품을 갖추신 전해철 위원님도 말씀을 잘 해서 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분위기가 된 것으로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현재 결정이 난 데 따른 정리 차원에서 김진태 위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물론 서기호 위원도 발의했는데 그것 하는 김에 덧붙여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도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바람에 논란이 확대가 됐습니다마는 일단 서 위원도 발의를 같이 했으니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요?

○전해철 위원 같이 하자니까요.

○소위원장 이한성 그렇지, 한 것으로 보고 다만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은 더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오늘 가결된 겁니까?

○소위원장 이한성 가결은 나중에……

○전해철 위원 가결은 안 됐고 의견만 모은 거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항상 그래요.

○김도읍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런저런 전후 사정을 떠나서 이견이 없는 것을 논점이 다르고 사안이 다른 법안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1건이라도, 김진태·서기호 두 위원님이 발의한 이 1건이라도 오늘 가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호 의원님 개정안의 일부만 저희들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쟁점이 없고 의견의 일치를 본 것도 같이, 집행정지하고 취소하고 같이 묶어서 또 따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에서 효율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정지는 집행정지대로 이견 없는 것은 정리하고, 취소는 취소대로 다음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소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제 소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서 위원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서기호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을 너무 자주 개정하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급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개정을 해야 되지만 급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다른 개정할 내용들이 자꾸 생기니까 가급적이면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6월 임시국회가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아직 더 심의해야 될 부분이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형사소송법 관련 내용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 다 논의한 다음에 가결 여부를 결정하자 이거지요.

○김도읍 위원 그러면 만약 구속취소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이게 결론이 안 나면 위헌 결정 난 구속집행정지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 정비를 하는 것도 만약 6월 국회에 안 되면 또 미루어 가지고 가을 국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철 위원 그건 아니고요.

○김도읍 위원 그런데 구속취소에 대해서 6월 국회 때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전해철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이 취지는 같이 있는 게 맞아요. 정지에 대해서 위헌이 됐다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게 있으면 그

결 함께하는 게 맞아요.

다만 이견이 있으니까 그 이견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하자 해서 만약 ‘이 취소는 다른 취지다’ 또는 ‘이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걸 가는 것은 상관없겠지요.

제 이야기는 그거니까 취소가 끝까지 결론 안 나는데 정지도 안 하자 이견 아니고 취소에 대해서 함께 있는데 결론이 명쾌하게 정리 안 됐으니까 그때까지는 한 번 더 논의하자 이런 취지에요.

○서기호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제가 낸 법안이 원래 소위에 회부된 날이 2013년 2월 19일이예요. 그런데 그동안 전혀 논의 안 되다가 김진태 의원님 안이 먼저 상정이 됐고 제 안은 아예 상정도 안 됐던 것을 어저께 밤에 급하게 발견하고 추가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의 취지는 뭐냐 하면 벌써 2년 전에 취소 결정과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개정안을 냈는데 논의가 안 됐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것도 저는 현재 결정의 1번에 나와 있는 영장주의 위반 이것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막상 이견이 있다고 하시니까 다음에 더 논의를 해 보는데,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원에서 찬성의견을 냈었고 전문위원도 찬성의견을 냈는데 현재결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집행정지 부분만 정리하는 것은 사실 현재 결정을 그대로 똑같이 법률화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법률화 안 되더라도 즉시항고에 대한 것은 검사가 즉시항고를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다 위헌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청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지금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한성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소위 회부가 그러면 서기호 의원님이 먼저인가?

○서기호 위원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딱 해 가지고.

○서영교 위원 2013년 2월.

○소위원장 이한성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은 다 일치한 의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속취소에 대한 즉

시항고는 의견이 분분한데 아마 서기호 위원님은 이걸 끝까지 같이 다루고 가자, 아니면 같이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기호 위원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 이거 말고도 뒤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이 다른 게 있잖아요.

○소위원장 이한성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뒤에 논의할 사항이 더 있으니까 논의를 마친 다음에 다음 본회의 직전에 할 때는 그때 합의가 안 되면 합의된 것은 집어넣고 합의 못 한 것은 떨어뜨린다는 방침은 정하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합의가 안 되면 합의된 것만 가져가고……

○김진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임내현 위원 제 의견이 비슷한 의견인데,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다른 게 많으니까 어차피 전체로 묶어서, 본회의 할 때는 다 묶어 가지고 위원회 대안인가요, 이렇게 가는 걸 전체로 이 의견은 그대로 그때 담는다, 그다음에 취소 부분은 더 검토한다 그래야지, 이걸 지금 통과시켜 가지고 본회의로 간다 이것은 또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것과 종합해서 할 때 이 부분은 그대로 집어넣는 것으로 하고 결정하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 독자적으로 두드리 는 것보다는 본회의 대안 중에 이 부분은 한다면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소위원장 이한성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글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회 일정이라는 것이,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언제 있을지, 전체 회의가 언제 잡힐지, 저희들이 항상 기다리기는 하지만 저희들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법안심사소위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해서 저희들이 매듭지을 것은 하나씩 매듭짓고 가는 게 맞는 게 조금 전에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그 부분 법률적 근거만 두고 ‘세부적인 것은 법무부령으로 위임한다’ 이 문구만 정리되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만약 취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6월 국회 때 못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이한성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김도읍 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촉구하는 게, 이렇게 이견 없는 것은 통과를 시켜 주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렇게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집행정지 부분은 우리가 했고 나중에 이것은 더 논의해서 그때 안 되면 이거라도 간다 이렇게 정리했지 않습니까, 제가.

○**김도읍 위원** 그것은 다시 법안1소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이한성** 어차피 다시 해야 돼요.

○**서기호 위원** 다음번 소위 때 하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이한성** 어차피 해야 됩니다.

○**전해철 위원** 다음 1소위 때 당연히 해야지.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소위든 전체회의든 일정이 저희들 계획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이한성** 물론 그런데……

○**전해철 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보세요.

지금 서기호 위원이 소위 회부한 게 2013년 2월이에요. 그다음에 김진태 위원이 한 게 2015년 3월입니다. 서기호 의원안이 훨씬 넓어요. 그중에 하나를 김진태 위원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기호 위원은 이걸 발의할 때 현재 취지에 맞게 더 넓게 다 망라해서 이걸 정리하자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논의하다가 그중의 일부는 맞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결론이 나와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아니다 기다. 그런데 오늘은 최종 결론이 아니고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으니까 검토하자 이렇게 갔는데 그중에 뒤에 회부된 것만 빼서 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적어도 다음 소위 할 때 결론을 내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소위원장 이한성** 소위원장이 아까 결론을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집행정지 부분은 우리가 결론……

○**김진태 위원** 그 차이는 맞는데, 그러면 질문 하나만요.

○**소위원장 이한성** 예, 물어보십시오.

○**김진태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오늘 제가 낸 집행정지 즉시항고 없애는 부분이 가결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소위원장 이한성** 그것은 동의를 한 걸로, 의

견을 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가결이 아닌 거잖아요. 가결이 아니면……

○**서영교 위원** 가결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그런데 뒤에 또 있잖아요. 상소심 미결구금 또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가자면 지금 이게 어차피 가결 의미가 없어요.

○**김진태 위원** 의미가 없지 않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전체 대안에 대한 의견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해서……

○**김진태 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개의 의안이 모여 있을 뿐이거든요, 중첩적으로, 병렬적으로.

○**소위원장 이한성** 그렇지만 이게 어차피 대안으로 가는 건데, 대안을 할 때 전체 의견이 모아져야지 지금 이거 한 장만 달랑 가결해 놓은들 이것만 갈 수가 없거든요.

○**김진태 위원** 표결하면 이것만 가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법무부안도 있고, 맞는 것 같이 가야 되니까 대안을 가결할 때 그때 의결을…… 물론 서 위원도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 안 되면 집행정지 부분이라도 아마 받아들일 걸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 지금 가결한다고 의미가 별로 없어요.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 한 가지만 짧게……

○**소위원장 이한성**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우리에게 문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에 법안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넓게 해서 해 주면 좋겠고요. 사실 오래됐어도 안 올라오고 그러다가 이야기를 해야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서기호 의원안은 2013년에 벌써 해 놓고 광범위하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김진태 의원안은 바로 몇 개월 전에 했어요. 그래서 서기호 의원안을 검토하면서 김진태 의원안을 같이 검토하는 게 사실은 원래 순서대로 하면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마침 두 안에 공통된 부분이 있었으니까 두 안의 공통된 부분은 찾았고 남은 부분들은 더 가야 하는데, 이것은 발의한 의원이 전반적으로 내가 다른 걸 좀 포기하고 가겠다……

예를 들면 똑같아요. 지난번에 상가임대차보호

법 저희가 발의했고, 김진태 의원이 발의했고 다른 의원들이 그 전에 발의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발의했지만 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다 포기하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뒤의 사람이 포기를 하든지 누군가 포기해야 이게 하나로 가는 거고.

법은 한 회기에 한 번밖에 못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여러 가지 절차를 찾아봤는데. 그래서 올라갈 때 한꺼번에 같이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좀 나뉘어지면 참 좋겠는데, 나뉘어지고 가고 또 가고 그러면 빨리빨리 법이 통과되면 좋은데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제가 지난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것 때문에 알아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소위원장 이한성 수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이 또 좋은 안을 하나 내셨습니다.

상소심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근거 마련 규정입니다.

맞지요? 수석전문위원, 그거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차례가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맞습니다. 의사일정 13항 같은……

○소위원장 이한성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상소심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근거 마련입니다.

이 내용도 위헌판결 사안인데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27쪽입니다.

원심판결 선고 후 재판 확정 시까지 상소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발생하는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8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 미결구금일수를 본형 형기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481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서 원심판결 선고 후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모든 구금기간을 전부

형기에 산입하려는 것으로, 미결구금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 제482조제1항은 ‘원심판결 선고 후 확정판결 전 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상소 제기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소 제기 없이 확정된 판결의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심판결 선고 후’를 ‘판결선고 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대법원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저희도 이견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판결선고 당일이 포함되는지가 조금 검토돼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형법 57조에 의하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이 수정의견에 의하면 판결선고 후 구금일수를 산입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판결선고 당일이 산입되는지의 여부가 조금 문언상……

○소위원장 이한성 발의자 의견 말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이후’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소위원장 이한성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기호 위원 ‘이후’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자가 들어가면 포함하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후’로 바꾸면 전체가 포함되니까 이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그러면 당일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태 위원 잠깐만, 다시 봐야 돼요.

현행은 선고일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판결선고 할 때 당일은 선고 구금일수가 안 들어갑니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이후’로 하면 그 하루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그날도 포함이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김진태 위원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것을 하루

를 빼려고 하면…… 이게 좀 어렵네요, 그렇지요? 선고 전이면서 그 후로 이렇게 하려니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입법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측면을 고려해서도……

○서영교 위원 이것은 전문위원이 기술을 발휘해서 잘 만드는 걸로 하고……

○전해철 위원 아니, 그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중요한데.

○소위원장 이한성 발의자가 검토를 좀 해 주고.

잘 검토해 보시고,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당일도 포함하느냐, 선고 후를 그다음 날부터 하느냐 이것에 대한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서영교 위원 원래는 구급일수에 당일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당일부터 들어가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당일도 들어가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당일도 들어가야 되지, 당연히.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당일도 넣어서 하면 되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당일도 들어가는 문언이 타당하겠지요?

○전해철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선고날이 들어가야 되겠지.

들어가야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구가?

○임내현 위원 이후나 후나 똑같이 봐야지.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판결선고일로부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판결선고일로부터 판결확정 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것 별로 이론이 없을 것 같은데.

판결선고 하면서 예를 들어 계속 구속 상태 같으면 계속 산입을 하는 것이고 만약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구속되면 그날도 당일 하루 포함되는 거잖아요, 원래.

○김진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후’니까, 선고 후라서 당일인지 조금 불분명하다 이거지요.

○임내현 위원 민법상에 기간 개시하는 것이라면 되겠지요.

○김도읍 위원 초일산입.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당일을 포함하는 걸로 법률용어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건 김진태 위원님이, 발의자께서 동의하시면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러면 이것은 다 의견 일치를 본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사실만 하나 묻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한 말씀,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2009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고 나서 대법원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지요? 상고사건이 엄청나게 폭증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형사사건의 상고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할 말로 상고이유서가 참 희화화될 정도로 상고사건이 폭증한 것은 맞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편제상으로는 37페이지에 상고법원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뒤에 한 5시 반쯤 논의하기로 하고, 공소시효 관계 규정이 여러 가지 제안된 게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게 의사일정 몇 항입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14항부터 20항까지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14항부터 20항까지 다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소위원장 이한성 그러면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알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법안들이 정희수 의원님 안부터 시작해서 정부안 등 7개 안이 제시가 됐는데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법안의 내용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 또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범죄, 아동 대상 범죄 등에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공소시효 관련 제도개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이 2007년 12월에 있었고,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이 2010년 이후에 또 발효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고요.

49쪽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살인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여전히 적용되는 것은 범죄 간의 죄질에 대한 비교형량 또 범죄자 간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범죄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됐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러면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주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죄—중범을 제외합니다만—로서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죄를 폐지하는 정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대법원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입법취지에는 공감하고, 그리고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 부분은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내지 약간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지금 법원의 의견이 정확히 뭐예요? 그러면 법무부가 제출한 안을 찬성한다 이런 말인가요? 정부안을 찬성한다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정부안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42페이지 보면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이견 없고 동의합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동의한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다 배제해야 된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그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발의를 하신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정부가 2013년 2월에 살인죄 관련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성폭력 특례법 그다음에 아동과 장애인 아이들에 관한 법 이런 것 속에서 강간을 하다가 치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법이 상당히 성폭력에 문제가 있으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그리고 또 14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해서 성폭행을 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고 하는 법이 특례법으로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것보다 훨씬 강한 살인죄에 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찰의, 법무부의 의견이 있었고 여러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좀 뒤늦게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사연, 예를 들면 태완이, 황산테러를 당했지요. 저 같은 경우 제가 갑자기 한 건 아니라 국정감사 기간에도 계속 대구에 가서 했던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태완이의 공소시효가…… 1999년에 태완이가 살해를 당했는데요. 이 공소시효가 2002년도에 15년으로 있던 것이 2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급되지 않으면서 태완이 같은 경우 99년도 사건이었는데 공소시효가 올해로 15년 만료가 됩니다. 지금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소급되지 못하면서 연장되지 못하고 올해 만료가 되는데 이제 다시 소를 제기해서, 3일 남기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두고 태완이의 살해가 전국에 너무 많은 살해로 적용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는 25년으로 연장된 것, 그리고 그전에 소급되지 못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기, 이것을 이번 기회에 공소시효를 정

부안 그리고 전체 법의 형평성에 맞춰서 폐지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저희가 작년 국감 기간에 좀 훑어봤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동인 경우에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공소시효가 20년인데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는데 독일은 또 특히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아이가 아직 뭐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우선 공소시효 중단 이렇게 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지금 절실한 사람들도 있고 벌써 이것은 2013년에 정부가 발의한 내용이고 해서 공소시효를 살인죄에 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좀 아픈 게 개구리소년 같은 경우에 애들이 납치되었는데 나중에야 우리는 살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을 유기해서 치사에 이르는 경우 또 강간해서 치사에 이르는 경우 등등에 관해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할 수 있으시다면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최근에 이렇게 흉악 범죄가 폭증해 가지고 공소시효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공소시효 폐지 내지 연장하는 법안이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법 간의 형평성 문제가 이걸로 완결되었는지 의심스럽고 또 범죄 간 경계 문제도 명확한지 형평성·체계성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무부와 대법원과 수석전문위원이 조금 더 체계 있게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서영교 위원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벌써 내놓았다고 말씀하셨고요, 법원도……

○소위원장 이한성 다른 의원님들 안하고 다 종합적으로……

○서영교 위원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했고요.

○소위원장 이한성 이의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서영교 위원 예.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살인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살인죄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다 이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전 법안에 다 동의하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각 법안에 공통적으로 살인죄가 들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모든 법안에 공통적으로 살인죄가 있어요.

○소위원장 이한성 이의가 없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살인죄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 이외에 다른 죄의 경우에는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래야겠지요. 지금 사실 우리도 공소시효를 건드리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고뇌가 좀 따르는 일입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우리만 잘 못 따라가고 있었더라도요. 우리 머릿속에 습성이 있었던 거지요. 공소시효가 있어 왔고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이제 세계의 나라를 다 봐도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가, 법조인들, 법률을 했던 분들에게 그것이 몸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오죽하면 법무부가 2013년에 냈고요. 살인죄 관해서 법원에서도 이견이 없다고 했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살인죄 부분에는 이견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저도 별 이견이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지금 이견은 조금 더 다른 것들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법무부, 법원,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낸 안 중에 저는 예를 들면 살인죄로 해도 괜찮고요. 저희가 했던 법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선 강간인 경우에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어요,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같이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폐

지되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서영교 위원** 그 부분도 같이 조절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넣는 김에 하나 더 넣는다면 촉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청부에 의해서 살인한 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를 좀 넣고 조정해서 만들어 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니까 법조인들만 조금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2015년에 하는 것이고요. 이걸 2013년부터 벌써 법안이 발의되었고 법무부는 2013년부터 내놓았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법무부 차관, 지금 정부안하고 서영교 의원님 안하고 어떤 차이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정부안은 사람을 살해한 죄 중에서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범죄라서 저희는 영아 살해나 촉탁·승낙 살인죄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 폐지 법안의 대상 죄가 아닙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해철 위원** 지금 폭행치사는 있나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없습니다.

○**전해철 위원** 폭행치사도 사형이 없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사형이 없습니다. 살인, 살해가 아니니까요.

○**전해철 위원** 아, 치사니까?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전해철 위원** 그러면 지금 서영교 의원안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드네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이 공소시효에 대한 제 의견은 이게 2007년에 일단 한번 연장이 되었고요. 이번에 또 강간 살인 등에 대해서 한 번 더 연장이 되어 있어서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반인륜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오히려 없어지는 것이 세계인권규약이나 이런 데 비해서 맞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공소시효를 다 없애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 결정을 한다면 저는 조금은 보류 의견이고 지금 대체적으로 법무부에 살해 또 사형에 대한 거에서 좀 더 축소를 할 수는 없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반인륜 범죄라면 제

노사이드나 고문에 대한 것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만 살해가 다가 아니고 일전에 우리가 할 때 강간 살인 등에 해서 좀 한정을 했듯이 이번에도 전체 말고 또 한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이 있는데, 어때요? 거기서 더 축소할 수 있는 범위는 없나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법안은 정부안보다 다 범위가 넓은 법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안을 제출할 때의 사회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다 검토했는데 당시로서는 하여튼 살해와 사형 그것이 우리 구성요건에 대강 맞는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그거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논의하고 계셔서 이것보다 축소한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전해철 위원** 아무튼 제 의견은 약간 유보적으로 하고, 다른 위원들 이야기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이 분야에 최고의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내현 위원님 고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내현 위원**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 전해철 간사 말씀의 취지가 방향이 맞는데 사실 정부안을 이렇게 풀어 놓고 보면 상당히 근접할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살인하면서 사형에 해당된 것은 형사처벌 범규정에 굉장히 잔인한 또는 악랄한, 강력한 죄목이니까 추출해 보면 방향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더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라인으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 자체는 아까처럼 반인륜 범죄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상당히 정부안에서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해철 위원** 정부안은 지금 법정형이 사형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소위원장 이한성** 좁혀 냈지요.

○**서영교 위원**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공소시효를 그렇게 고수 쪽으로 보는 근거 이유가 뭐지요?

○**임내현 위원** 법적 안정성이라거나 많은 사람이 잘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당할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한 삶이 되거든요.

○**서영교 위원** 왜 불안한 삶이 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적 안정성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기하고 지금이 달라진 것은

우선 증거가 오랫동안 보관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사관들의 과학성이 아직 따라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시대에서 이제 증거에 대한 보전이 제대로 되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강간,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산에서 죽여 버리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모르고 나서 그걸 찾았더니 공소시효는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유 없이, 없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아이의 목에다가 황산을 부어 가지고 그 아이는 죽어 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소시효가 끝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법적 안정성 이야기 부분에 혼란을 줘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더욱더 과학적인 수사를 해야 되고 증거보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폭력 특례법 등에 의해서 벌써 2012년도에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왔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예를 들면 2007년에 25년으로 늘어나면서 그전에 해결되지 못했던 공소시효, 예를 들면 99년의 사건이 먼저 공소시효가 폐지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25년이 되어서 더 가야 하는데, 공소시효라고 하는 숫자는 있는데 당한 피해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이거는 당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족과 그 주변은 똑같이 서서히 살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증거보전의 능력, 과학수사의 능력, 수사인력의 능력, 그리고 법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이유가 생겼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내놓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 드리지만 청원서가, 그 몸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도 주변도. 4만 부의 청원서를 내서 얼마 전 국회에 청원서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부가 2013년에 했는데,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낼 때는 그냥 실적 하나 올리려고 내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법적 안정성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한다고 피해자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좀 마음을 열어

주시고, 벌써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제가 보여 드리듯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연방법은 무조건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어요. 없어요, 아동성매매 인신매매까지. 미성년 유괴, 아동성매매, 인신매매, 아까 사형으로 처벌되는 건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없고요, 연방법에. 이것도 마저 없고요. 뉴욕주법, 캘리포니아주법 이런 데로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서 강간, 가중 성적학대, 아동과의 성행위, 여기에도 공소시효가 없어요.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법적 안정성을 흔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건 공소시효가 없어’라고 함으로써 범죄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다 보면서 의원들이 입법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도 귀중한 발의를 해주셔서 가지고 우리도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법무부를 중심으로 형사법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법적 안정성과 또 오랫동안 숨어 지내면서 시효를 넘기느라고 고생한 것도 일종의 처벌이다 이런 게 또 있고 증거는 희박해져 간다 이런 근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굳이 그것만 공소시효를 다 폐지하느냐 하는 데 따른 형평성도 좀 따져 봐야 되고 몇 가지를 고려하기 위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한데, 우선 김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태 위원 특히 법무부는 이것도 좋은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막 아주 잔혹하고 아주 나쁜 범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공소시효를 늘려 가지고 끝까지 처벌하자…… 끝까지 데려다가 재판받아서 사형 확정되면 뭐해요, 집행 안 하면서?

한쪽에는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안 지키면서 새로이 이렇게 힘들게 법을 개정까지 해 가지고 엄단 의지를 보이겠다?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사형 확정자 집행할 것에 대해서 새로 장관님 오시면 법무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국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만날 국민여론을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국제적인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되면 그 법 해당 조항은 폐지 의견을 내든가요. 법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지금 법무부가 스스로

준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서기호 위원 차관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정부 안에 ‘사람을 살해한 범죄’라고 돼 있으니 형법상의 살인죄 외 강도살인죄 같은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다 포함됩니다.

○서기호 위원 특별법에서의 사람을 살해한 범죄도 포함되는 거니까 저는 충분히 넓게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의원님들 안과 거의, 그 중에서 하여튼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정부안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영교 위원 공통분모예요, 교집합.

○서기호 위원 공통분모니까 이 부분은 통과된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김진태 위원 저는 그렇다면……

○소위원장 이한성 말씀하십시오.

○김진태 위원 사람을 살해한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못 했는데 공통분모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15년에서 25년으로 이렇게까지 늘려 놓은 게 8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8년 해 보고 이제는 아예 이것을 다 없애 버리겠다? 글썄요, 저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몇 개 사건에 대해서 국민여론, 법감정에 휩쓸려서 이렇게 막 갈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이제 한 바퀴씩 다 돈 것 같습니다.

오늘 대충 개념은 정부에서 합리적인 선을 제시했다는 것을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결론을 내리고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결단하도록 하고 이 정도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예, 하십시오.

○서영교 위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가 법을 발의했고 그리고 또 법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용어를 곱게 쓰면 좋겠고 예의 있게 쓰면 좋겠습니다.

2007년에 하고 8년밖에 안 돼서 바꾸는 취지는 아니고요, 2012년에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강간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4세 미만의 아동 성폭행 그리고 장애인 성폭행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어요.

그러면 살인죄보다 사형이라고 하는, 형이 예견되는 살인죄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25년인데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것보다 어찌면 우리가 더 약하다고 했던 부분에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강한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는 당연히 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무부가 검토를 하게 된 것이 이것을 해 보지도 않고 얼마 안 돼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 법조인분들만 생각이 단혀 있었을까,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단혀 있었고 관심이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울부짖는 사람들,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 보다가…… 이것도 제가 혼자 만나게 아니라 TV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지요. 그것을 보다가 도와야겠다라고 하면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제 주변에 공소시효 폐지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제가 눈을 뜬 겁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나는 왜 저걸 몰랐을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보자라고 했더니 벌써 많은 의원님들도 공소시효 폐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셨고 또 법무부도 조치를 취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뒤차를 타고 온 겁니다.

저도 모르면 여기서 위원님들 의견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아프고 힘들고 소외된 약자의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 같으면 듣고 반영을 하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국정감사와 기자회견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따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좋은 말씀 경청하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고 자꾸 바쁜 일로 가실 분이 생겨 가지고 조금 더 진척하기 위해서 그 정도만 하시고, 우선 마무리하고……

○서영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조금 더 논의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무부하고 전부 다, 저희가 의견 조율하느라고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가 낸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양보할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조율할 생각이 있으니……

○소위원장 이한성 예, 그것을 위해서……

○서영교 위원 그러면 바로 다음 소위에서 우선 논의해 주는 것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예, 그렇게 하지요.

○서영교 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전문위원을 통해 정부와 조정해서 정리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예, 정부가 낸 게 있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각 위원님들은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한성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희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7)(계속)

3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3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3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3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0)(계속)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68)(계속)

3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4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4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94)

4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50)

(16시47분)

○소위원장 이한성 시간이 많이 갔는데 위원님들 조금만 더 참여해 주시고 지금 급한 게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민생과 직결되고 또 해당 분야에서 빨리 검토해 달라는 민원도 빗발치고 있어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42항까지 17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희선 의원 등 의원 열여섯 분께서 제출해 주셨고 또 정부도 제출했습니다.

저희 자료는 조문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 정부안입니다.

목재 제품의 규격·품질 관련 범죄 수사권의 확대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에 산립청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서 목재 제품의 규격·품질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목재 이용의 증진이 강조되고 있고 또 개정안이 목재 제품의 규격·품질 관련 범죄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해서 목재 제품에 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김도읍 위원** 특별하게 문제 있는 것만 이야기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래도 내용은 하나씩 짚어 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화장품 등 관련 범죄 수사권인데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 안은 화장품법 그리고 의료기기법상 범죄를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로 추가하고 그 직무를 수행할 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는 점에서는 최동익 의원안하고 정부안이 동일합니다.

다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또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범죄를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 보건복지부 소속 국가공무원에게 범죄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 화장품법·의료기기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 권한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 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의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범죄 수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화장품법 및 의료기기법상 범죄는 주로 신고·허가의 위반인데 위반 대상인 신고·허가가 대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만큼의 접근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범죄는 일반형사범의 성격이 강하고 또 범죄조직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특별사법경찰보다는 일반사법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방 및 구급활동 관련 범죄 수사권인데 이 부분은 임내현 의원께서 제출해주셨고 또 정부안이 있습니다.

내용은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소방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확대되는 직무범위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범죄가 포함되는지 등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안을 검토해 보니까 임내현 의원이 제출하신 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78쪽입니다.

관세법과 경합법 관계에 있는 문서·인장죄 수사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부안이고 개정안의 내용은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세관공무원의 직무범위에 관세법과 경합법 관계에 있는 문서·인장에 관한 죄를 포함시키려는 내용인데 이것도 관세법 등 범죄 중에서 문서나 인장이 사용되는 범죄로 형법상 범죄와 경합법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9쪽 환경 관련 범죄 수사권, 정부안입니다.

환경보전법상 범죄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81쪽입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및 미신청 관련 범죄 등 수사권인데 여기에는 서영교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내용은 양 안이 공히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에 관한 범죄 등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83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범죄 수사권입니다.

이 내용은 정부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범죄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공무원 등에게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안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85쪽, 사금융 관련 범죄 수사권입니다.

여기에는 노회찬 의원님, 노웅래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그리고 정부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업법상 범죄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부업법 위반 등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일반사법경찰의 경우에는 통상 피해가 드러난 경우에 수사를 개시하는 면이 있고 또 대부업법 위반 범죄는 미등록 대부업 영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권한과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단속에 종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경우 지속적인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부업법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직접 관할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소속 국가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채권추심법상 범죄 관련입니다.

채권추심법상의 범죄는 폭행·협박 등 일반형사범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이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일반사법경찰보다 시간적·공간적으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상 범죄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단계 판매업이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관장하고 있고 다단계 판매업 등에 대한 단속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경우에는 단속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에는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인원이 부족해서 관련 수사권을 부여받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91쪽, 체육시설 관련 범죄 수사권 부분입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10번, 건축물 관련 범죄 수사권인데, 정부안의 내용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에 따라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에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건축물의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11번, 어린이집 관련 범죄 수사권입니다. 이 부분은 이운룡 의원안과 정부안이 같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두 안의 내용을 보면 양 안이 모두 최근 만연한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령 등을 방지하고 영유아를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의 경우에는 단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다만 아동복지법의 경우에는 대상범죄가 일반 형사범의 성격이 강해서 특별사법경찰을 인정할 만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을 감안해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번, 수산생물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13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수사권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단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직무범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를 포함

시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 소속 국가 공무원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단속·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 직원의 경우에 금융감독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법감정이라든가 사법경찰관의 오남용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인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04쪽, 도시철도시설 내 범죄 등 수사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희선 의원하고 노웅래 의원 그리고 김광진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공안사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과 도시철도공사의 임직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07쪽, 게임물 관련인데 전병헌 의원이 제출한 내용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에 게임물 사후관리 및 게임물 관리·감독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법행위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등을 수거·폐기할 수 있는 등 불법게임물에 관해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수사의 효율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에 불법게임물 유통에 관련된 불법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상 등록규정 위반 또는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영업정지명령 위반 등과 같은 사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게임물 관리와 무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09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련인데 윤관석 의원이 제시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불

법사행산업의 단속에 종사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행산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사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11쪽, 김성찬 의원이 발의한 해적행위 관련 내용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해적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를 추가하는 것인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군사법원법 제44조에서는 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를 군사법원 관할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12쪽, 도시가스 관련 김상훈 의원이 제출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 공무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속 임직원에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그다음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의 범죄에는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해서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일반 형사범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가스 안전공사 소속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5쪽, 원자력이용시설 등 관련 범죄 수사권 내용입니다. 노웅래 의원안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관리사무 등에 종사하는 국가 공무원에게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에 관한 법령 위반사항을 감찰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17쪽, 근로감독관 관련 내용입니다. 정희수 의원이 제출한 법안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범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직업안정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직업안정법 등의 경우에 고용노동부가 보고 및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의 범위가 근로기준이나 환경 등 근로관계와 관련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는 분야여야 하는데 외국인고용법에 규정된 범죄 중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의 외국인근로자의 채용 등에 개입하는 행위' 등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어지는 분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19쪽, 자치경찰공무원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120쪽, 범죄경력 조회 등과 관련된 내용인데 정부안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 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122쪽, 사법경찰 직무 전담부서 관련 정부안입니다.

사법경찰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 소속 관서의 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법률의 변동은 반영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주현 특사경권 부여 확대 15개 분야 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관련된, 103쪽입니다. 정부안이 제출된 것 중에서 수정의견은 7조의3 금융감독원 직원을 삭제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미 민간인의 경우에도 선장이나 기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등 이렇게 특사경이 부여된 예가 있고요. 금감원 직원들은 형벌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있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에 한해서 특사경을 지명한 후에 시행성과를 평가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고, 금융위의 조사공무원들은 조사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통신사실 조회나 출국 금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서 역시 특사경으로 지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요.

나머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개정사항에 대해서 모두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어디가 다르다 그랬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103쪽……

○전해철 위원 번호로 말씀하세요. 몇 번?

○법무부차관 김주현 13번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수사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금융위원회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대법원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간단하게 저희의 신중 검토 의견만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대부업 관련된, 일곱 번째인가요? 노회찬 의원님, 노웅래 의원님 그리고 정부안, 여기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수석전문위원하고 의견이 같으면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르면 다른 부분만……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알겠습니다.

열세 번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이것도 역시 수석전문위원 의견하고 같습니다, 신중 검토. 그다음에 열네 번째 도시철도 관련 역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열일곱 번째 해적행

위 관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다 하셨어요?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네 가지입니다. 불법대부업 관련, 열세 번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그리고 열네 번째 도시철도 관련, 그다음에 열일곱 번째 해적행위 관련, 이 네 가지만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이게 정리가 굉장히 복잡한데, 물론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검찰을 산하기관으로 두는 법무부로서 그 의견은 우리가 상당히 존중할 필요가 기본적으로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하고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지금 불일치하는 부분은 거의 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렇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전해철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려면 그래도 하나씩 봐야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리고 대법원에서 신중 의견 내신 부분은 수석전문위원이나 법무부하고 의견이 없습니다. 다 같은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러면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 수석전문위원, 되고 안 되고의 원칙이 뭐예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일단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현실적인 필요성 부분, 그런 부분들……

○전해철 위원 전문성하고,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다음에 현실적인 필요성, 그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필요성이야 다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전문성하고 필요성이라 이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전해철 위원 저는 이것을 그렇게 법무부하고 전문위원이 다 했다 해서 넘어갈 것은 아니고요, 하나하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러면 1항부터 죽 해 가지고 봐 넘어가지시지요, 한 20개 되니까. 그러면 1항부터 축조심의를……

○서영교 위원 이걸 언제 다 축조를 해요?

○전해철 위원 해야지. 오늘 아니면 다음에 하자는데 당연히 다 봐야지 이것을 어떻게 그냥 다 통으로 넘기겠어요?

○서영교 위원 그게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보통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각 보좌진들이나 방에서 다 보고 문제가 될 때 체크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임내현 위원 여기서 결론을 내 버려야 돼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다 보고 와서 해야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이것 71페이지부터 죽 훑어 가면 되지 않을까요?

○전해철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한번 하든지.

○서영교 위원 아니, 저는 다음에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해철 위원 오늘 보고했으니까 서영교 위원 안대로 이론을 제기한 것만 해서 하자니까, 검토 해서.

○소위원장 이한성 지금 수석전문위원하고 정부, 대법원이 의견 일치가 거의 없으니까……

○전해철 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위원들이 다 봐야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그러니까 지금 축조해서 보면 안 됩니까?

○서영교 위원 이전 있는 것만 보자는 말이지요.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보고 다음에 이의가 있는 것만 해 보자 이것도 안이 되는 거지요.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이의가 있는 것은 수석전문위원하고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하고, 지금 보니까 법무부와 수석전문위원은 별 이견이 없고 법원행정처만 네 가지에 대해서 신중 검토……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아니, 의견은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주현 의견은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신중 검토하자는 의견이 같 다 이런 뜻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위원들도 봐야 되니까 뭐 하면 위원들이 받아서 각 방에서 보고 다음에 볼 때는 이론이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면 어쩌나 이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 오늘 하나씩 다 보고 가야 되니까.

○서영교 위원 오늘 하나씩 다 보는 것보다 각 방에서 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요.

○전해철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다음에 통과하고. 그렇게 합시다.

○김도읍 위원 극히 이례적으로 또 심사를 하네.

○소위원장 이한성 그러면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 사정이……

○전해철 위원 그렇게 안 하면 스물 몇 개를 다 올려 가지고 하나씩 봐야지. 이것을 셋이 합의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김도읍 위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형사소송법도 다 각 방에서 보고 이견 없는 것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특사경법이지만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법이에요. 다 별개의 법이에요.

○전해철 위원 그러면 지금 봐요.

○소위원장 이한성 좀 보고 넘어갑시다. 지금 보면 돼요. 71페이지부터 죽 봅시다.

○전해철 위원 페이지가 다르니까 번호로 해서 1번부터 목재 제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1항이 목재 제품의 규격·품질 관련 범죄 수사권 확대 이것입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한번 보시지요.

○전해철 위원 이의가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라고……

○소위원장 이한성 이것은 누가 개정안 냈습니까? 그냥 이론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2항은 의료기기·화장품 등 관련 범죄 수사권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조금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것은 신중 검토니까 그냥……

○법무부차관 김주현 정부안대로고요.

수석전문위원님,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주현 정부안하고……

○소위원장 이한성 같은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임내현 위원 다시 바꿨어요? 정부안에 찬성해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정부안에 찬성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안 내용을 죽 검토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화장품법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한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측에서 억셉트한 내용입니다.

○전해철 위원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뭐라고요? 일단 최동익 의원안하고 정부안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동익 의원안은 어떠한 부분에 반대고 정부안은 어떠한 부분에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먼저 의료기기 및 화장품 관련 범죄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최동익 의원안이 있고 정부안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정부안의 경우에는 화장품법하고 의료기기법상의 범죄로 되어 있고 최동익 의원안은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정부안을 위주로 하는 게 일단 타당하다고 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검토의견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에게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은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최동익 의원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소위원장 이한성 그것은 다른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같은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73페이지 의료기기, 우선 그것만 하고……

○전해철 위원 아니, 거기에 마약류가 있다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 뒤에 76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것은 다른 얘기잖아. 그것은 항이 다르잖아.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같은 내용입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 최동익 의원안에 마약류가 있으니까.

○소위원장 이한성 뒤에 마약류가 같이 있나?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래서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것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하기보다는 일반사법경찰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정부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주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게 정부 의견, 정부안하고 같은 것이고요. 이것 뒤의 다른 법률을 빼면, 최동익 의원님 안에는 보건복지부가 들어 있는데 정부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이 빠지면 보건복지부도 빠지는 게 맞다고 해서 정부안하고 같은 의견을 내신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러면 정부안대로 가는 걸로 정리를 하지요.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은 직무범위도 그렇고 직무수행자의 대상도 그렇고 정부안이 맞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리고 과거에 대검 마약과장 등 서울중앙지검, 고검 부장을 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금 정부안이 타당한 것 같이 보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사계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시니까 우리가 존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그러면 3항 소방·구급활동 관련 범죄 수사권입니다. 존경하는 임내현 의원님께서 안을 내셨습니다, 정부도 내셨고.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 부분은 거의 내용이 같은데 다만 임내현 의원님 안이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연관해서 검토를 해 보면 임내현 의원님 안으로 하는 게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임내현 의원님 안을……

○소위원장 이한성 더 좋은 걸로.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 안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경륜이 높으시니까.

○전해철 위원 그러면 죄명이 지금 다중이용하고 초고층 2개가 추가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법무부 의견은 어때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항은 관세법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문서·인장죄 수사권,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이니까 정부의 필요성에 입각해서 개정안 낸 걸로……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수사 관련해서 출입국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거기에 문서를 위조하는 것들이 간간히 있어서 이미 그것은 반영이 돼 있고 이 관세의 경우에도 신고나 뭐나 할 때 허위문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전해철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다음 5항 환경 관련 범죄 수사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환경보건법상 범죄에 대해서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성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결과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이런 게 아직도 특사경으로 안 돼 있습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게 상당히 필요했을 텐데.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6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범죄 등 수사권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도 안을 내셨고 정부에서도 안을 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간단히 요약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거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에 관한 범죄 등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관련 담당자들에게 수사권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네.

○전해철 위원 보완,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대상을 하는데 서영교 의원안하고 정부안이 뭐가 다른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내용은 거의 다 같습니다. 특별히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러면 우리가 어느 법안을 해야 되는가?

○법무부차관 김주현 법률의 순서만 다른 거고 같은 겁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어떻게 그렇게 검토를 잘해 가지고 둘이 일치이 됐지요?

○전해철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보완해야 된다는 게 뭐라고요?

○소위원장 이한성 ‘보완할 필요가 있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동차관리법상에는 이런 걸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특별사법경찰법에는 없으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보충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있어야 된다 하는 설명이었는데 우리가 그냥 뒤꼬리만 보니까……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돼야 된다 이런 뜻인가?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7항 석유·석유대체연료 관련 범죄 수사권입니다.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범죄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공무원 등에게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가납…….

○전해철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사금융 관련 범죄 수사권입니다.

○전해철 위원 이게 좀 문제예요.

○소위원장 이한성 이것 좀 복잡하네. 이것은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이 내셨고 노웅래·노회찬 의원님도 내셨고 정부에서도 냈습니다.

○전해철 위원 전문위원 이것 차이점 좀 먼저 말해 보세요, 안마다 차이점을 간단히.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먼저 노회찬 의원안의 경우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현장 조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상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안의 경우에도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단속인데 여기에는 금융위원회 소속 국가공무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노회찬 의원안이랑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등에 대한 단속……

○전해철 위원 그것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서영교 의원안은?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서영교 의원안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 불법추심 단속, 이것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등에 관한 사무와 관련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국가공무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선불식 할부거래 위법행위 조사 이 부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국가공무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안을 말씀드리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단속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등 조사·단속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것을 냈지?

○법무부차관 김주현 공정거래위원회……

○서영교 위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빠져 있나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영교 위원 위원회는 국가기관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실질적으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선에 내려가서 하는 사람의 숫자는 아주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안에는 반영 안 해 놓은 상황입니다.

○서영교 위원 안 했는데 그것 넣어도 되는 거지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이준식 법률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위임되어 있어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이준식 해당 법률에서 이 사무를……

○서영교 위원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것이지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이준식 아닙니다. 위임을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만 하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넣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지자체의 고유업무로, 그냥 전속업무로 돼 있네.

○법무부형사기획과장 이준식 공정거래 관련법에서 위임을 해 놔 가지고 지금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은 이 단속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월권이 돼 버리네요.

○서영교 위원 없어서 지금 우리가 넣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형사기획과장 이준식 그 업무에 종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업무에 종사를 안 해요?

○김도읍 위원 그러면 이 과장님, 대부업법상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로입니까?

○서영교 위원 그러면 금융위원회도 그렇게 되는 건가?

○법무부형사기획과장 이준식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이것을 좀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명쾌하다 아닙니까. 금융위원회가 법적으로 이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사경 지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관찰하고……

○서영교 위원 금융위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법을 낼 때는 그게 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전해철 위원 일단 큰 틀에서 전문위원이 대상을 죽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대상을 놔두고 검토의견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이 있고 특사경을 누구한테 인정하냐 안 하냐, 이 2개가 차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떠한 것은 좋고 어떠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특사경으로 하는 것은 어디까지는 인정하고 안 하고 이렇게 딱 간단하게 정리해 주면, 앞에 표를 보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서영교 위원 대상은 다 괜찮다고 했고,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대상이 지금 대부업하고 대부중개업이 있고 여기는 문제없고요. 그다음에 대부업하고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단속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그다음에 선불식 할부거래 위법행위 조사 이것도 문제없습니다. 그다음에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그런 내용은 대상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고요.

○김도읍 위원 폭행·협박은 문제가 있다면서요. 채권추심법상 폭행·협박, 대상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것은 대상이라기보다 채권추심 방식에 대해서……

○서영교 위원 폭행·협박하는 채권추심자를 단속하는 데는 좀 힘이 약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경찰이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되지. 그러면 대상에서도 대부업에 대해서는 이론이 전혀 없지만 방문판매나 다단계, 선불식 중에서도 뒤의 검토의견을 보면 채권추심에 대한 것이 돼 버린다는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상 중에서도 큰 틀에서 세 가지 중에 빠질 게 있다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직무를 수행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대상을 하는데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채권추심에 대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것일 수도 있는데, 단지 여기서 채권추심법상의 범죄와 관련해서 이것을 하는 경우는 일반 형사사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 그러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법률에 의하면 당연히 채권추심에 포함될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런데 그게 꼭 채권추심뿐만이 아니고 방문판매와 관련해서는 채권추심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특별히 채권추심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범죄로 특별사법경찰……

○전해철 위원 그러면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지금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수정의견으로 되어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되어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어디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91쪽 보시면 수정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 페이지는 내가 다르니까. 수정의견 거기의 45, 48을 어떻게 바꾸었느냐고?

○서영교 위원 우선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전해철 위원 아니, 서 위원님 미안해요. 그 부분 좀 정리를……

○서영교 위원 하고 계시니까…… 아니, 이젠 제가 낸 법안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법안이 제기될 때 정부도 그렇고요. 법안이 제기된 게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실제로 매일 '불법 채권추심 당하다가 일가족 자살'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유행한 영화가 '피에타'예요. 채권추심 받던 아들이 죽어간 이야기, 그게 영화 '피에타'이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부업체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보고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선 채권추심이 금방 여기 나왔듯이 폭력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혼자서 하면 안 되지요, 서울시가. 경찰과 같이 하든지 그 힘을 빌려서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법의 취지는 대부업체가 있는데 그게 불법인 게 밝혀졌다, 그리고 불법으로 추심하고 있는 게 체크됐다, 이럴 때 찾아갈 수 있고 쫓아갈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건데, 지금 말씀처럼 폭력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그것은 이 사람들이……

○소위원장 이한성 일반 경찰……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그걸 같이 하거나 불려서 해야지 가서 막 거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 부분에도 영향이 돼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거니까 그 부분들도……

왜냐하면 지금은 그들이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추심을 하면 무조건 법에 걸려요. 제가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을 발의했고 2013년 12월 30일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사실 일가족 자살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 빌린 자에게만 추심을 해야 하고 그 사람이 거부할 때는 변호사를 둘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폭력으로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굳이 안 해도 되고, 경찰이 가서 그것은 다 불법이 되니까…… 그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알겠습니다. 그것 그렇게 정리가 된 거지요?

○전해철 위원 아니, 지금 대답을 정확히 해 보시라고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의원 세 분하고 정부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정부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을 해 가지고 수정의견을 제시한 내용이고, 여기에서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업이라든가 대부중개업, 그다음에 방문판매라든가 다단계판매, 그다음에 선불식 할부거래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전부 거기에 대해서 범죄행위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법상. 그래서 범죄행위가 죽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채권추심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보다도 일반 경찰이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했다는 말씀입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바꾸느냐고요. 대부업 등록 법률 중 불법추심은 제외한다 이렇게 가야 되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런데 그것은 다른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 안 받아들 이게…… 정부안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한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거고, 그래서 정부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되는 거고, 채권추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정부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 의원이 의견을 제시했으니깐 그 의원들 중에 몇 가지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본적으로 대부업법에 대해서는 정부안하고 수석전문위원 의견이 같은데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특사경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런데 대부업법에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맞겠고요.

○소위원장 이한성 그건 공정위도 그렇지요?

○김도읍 위원 공정위는 또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채권추심법은 우리가 일반사법경찰이 아니고 특별사법경찰은 그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특수성을 살려야만 단속의 실효성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건데 폭행·협박은 지금 우리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다 이렇게 아니고 이것은 일반 형사범이기 때문에 직무범위에서 빼야 된다, 그래야 특별사법경찰관의

취지에 맞다……

그다음에 방문판매법에 보면 이게 또 공정거래 위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정부안처럼 직원 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일선에 나가서 단속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할부거래법은 전부 다 지자체 소관 이거든요, 공정위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 2개를 한꺼번에 다 보려면 복잡해 지고 조문이 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또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이나 할부거래법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효성이 없는 것을 감안해서 빼 버리는 것으로 하면 정확히 정리되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보시지요.

먼저 그 대상과 관련해서 대부업, 방문판매, 선불식 할부거래 3개 다 넣는다 이것은 그러니까 정부안보다 추가되는 거지요, 정부안에는 선불식이 없으니까. 일단 거기에 합의되는지의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빼는 것에 대해서 서영교 위원님이 불법추심을 빼는 것에 동의를 하는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단속공무원 관련해서 발의 의원이나 위원들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빼는 것에 동의를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논점이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불식 할부거래 위법행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넣는 것은 대체적으로 전문위원하고 동의하는 것 같아.

어때요? 법무부, 동의합니까?

○법무부차관 김주현 저희 정부안에는 지금 할부거래법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전해철 위원 없으니까 동의하냐고요. 그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 줘야 되고요.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저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시켜서……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을 좀 듣고…… 위원들도 혼동되니까 큰 틀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말씀하시지요.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한 대로 법률 중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일단 서영교 의원님 안에서는 추가되어 있으니까 저도 이것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빨리 동의

여부를 판단해 주시고, 위원분들하고 법무부가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한 대로 불법추심 단속을 넣느냐 빼느냐, 그런데 이것은 서영교 의원님 안에는 중요하게 있으니까 빼는지의 여부하고, 나머지 금융위원회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빼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보자 이거지요.

○서영교 위원 저는 공정위·금융위 부분은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할게요, 얘기하신 것처럼.

○김도읍 위원 이준식 과장님,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유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폭행·협박에 대해서 특사경 직무범위에 포함된 입법례가 있습니까, 법 중에?

○법무부형사기획과장 이준식 지금 하려고 하는 대부업 채권추심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이라든가, 허가받은 대부업이나 안 받은 것 외에도 상법상으로 채권을 양수하거나 일반적인 채권을 가지고 추심할 때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것은 일반사법경찰관의 행위인 거고, 지금 우리가 특사경법을 추가하려는 것은 대부업의 단속에 관해서 감독하는 일반 공무원들이 그 범위에서 특사경권을 행사하는 것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인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인 채권도 추심을 할 때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범위가 인허가의 범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하게 되면 일반사경의 권한이 크게 침해되게 됩니다.

○서영교 위원 일반사경 권한이고 특사경은……

○법무부형사기획과장 이준식 특사경은 가령 특정한 단속, 어떤 부분을 감독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특사경권을 받아야 되는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광범위하게 인허가와 무관하게 상법상에 채권을 양수한 사람도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단속하는 권한을 일반 공무원들에게 줄 수는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래요. 그러면 뜻은 맞는 거지요?

○전해철 위원 예.

그다음에 서 위원님, 어때요? 공정거래위하고 금융위원회 빼는 것은 동의한다?

○서영교 위원 예, 안 맞는다, 그러면.

○전해철 위원 그러면 정리됐네.

그러면 정부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그것은 넣어도 상관이 없고?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이견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정리한 대로……

○**소위원장 이한성** 정리됐지요?

그러면 정리가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전문위원, 정리됐어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됐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다음 9항 체육시설 관련 범 죄입니다.

정부안이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이 부분도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별 이견이 없습니다.

○**전해철 위원** 이게 전문성·신속성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김도읍 위원** 체육시설 기준 조사하고 이런 거예요,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지금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련 영업부터 사업계획 승인 또 체육시설 설치, 기타 체육시설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 포함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게 전문성이 좀 있었다고 봐야지요.

○**김도읍 위원** 인허가라든지 시설 기준이라든지……

○**소위원장 이한성** 예, 체육시설 기준 이런 것은 좀 굵직굵직……

○**전해철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다른 시설도 다 그렇지.

○**소위원장 이한성** 소방법 이런 것이 문제네. 소방기준 뭐……

○**전해철 위원** 아니, 이것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너무 넓은 것 같은데. 아까 그래서 처음에 물어볼 때 전문성하고 필요성 이야기하는데 필요성이야 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런데 이게 정부안으로 온 것을 보면……

○**전해철 위원** 저는 이것은 좀 보류 의견입니다.

○**법무부차관 김주현** 체육시설은 지금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소유권자들의 시설하고는 좀 달리 보는 거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감독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법령 위반

에 대한 감독, 단속할 때 그것은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전해철 위원** 공연시설은?

○**법무부차관 김주현** 공연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겠습니다만, 체육시설에 실제로 단속이나 이런 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해당 부처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전해철 위원** 아니, 건의야 다…… 뒤에 원자력이라든지 다 오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체육시설이 미승인으로 됐을 때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게 신속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전해철 위원** 이게 전문위원 의견이 좀 갈린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저도 처음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것까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체육시설이라는 게 아까 차관도 말씀하셨지만 다중이용시설이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한성** 그러면 이것은 보류해 놓고 갑시다.

○**전해철 위원** 저는 이것은 보류입니다. 전문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임내현 위원**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도 애매하고 위험성이 큰……

○**김도읍 위원** 이것은 체육시설법에 보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보면 되지, 자꾸 보류하지 말고 보십시오.

○**임내현 위원** 그런데 특수하게 그렇게 전문적으로 할 정도가 있느냐고.

○**김도읍 위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산림청 직원들이 산림 도벌하는 것, 특사경……

○**임내현 위원** 산림은 상당히 크지요, 넓지.

○**전해철 위원** 산림은 진짜 정성이지. 김도읍 위원, 나무 한번 베어 봐요.

○**김도읍 위원** 요새 전기톱 천지인데, 산에 가지고 나무 베는 게 뭐 전문성이 있나……

○**임내현 위원** 공연시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일반적인, 생활에 널리 퍼진 것을 각각 분리해 가지고 특별사경으

로 해야 한다는 건데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 법은. 전례도 없고 전문성도 약하고 필요성도 약하다고요.

○**전해철 위원** 이것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한성** 정부에서 이것은 우선 빼놓는 걸로……

○**전해철 위원** 이것은 보류하고 갑시다.

○**소위원장 이한성** 빼놓고 넘어가 봅시다.

10항 건축물.

○**전해철 위원** 김도읍 위원님이 정 하자고 하면 정회하고 토론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그래요, 나중에 식사하시면서 하시기로 하고.

건축물 관련 범죄,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 부분도 정부안인데 건축법상 범죄입니다. 건축물의 설계·시공·공사감리 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안전이 중요하니까.

○**전해철 위원**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건축물의 설계·시공?

정부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차관.

○**법무부차관 김주현** 건축법의 벌칙규정에 설계·시공·공사감리·유지관리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부실하게 돼서 착공한 후에 위험을 일으킨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행정적인 단속과 또 행정적인 단속이 형사처벌과 연결되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결되는 분야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사법경찰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일반사법경찰의 지식 가지고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수사하기가 조금 부족한 영역에 해당 공무원들에게 특사경을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건축공무원들이 주로 항공사진 찍어 가지고 불법 증축, 거주요건 위반 여부 이런 것 다 분석하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서영교 위원** 이런 건축물에서 사법경찰관이 할 게 뭐예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설계·시공이나 건축법상 하자가 있는 건축을 해 가지고 손괴가 일어나거나 사람들이 다치거나 한 경우에 그게 범죄 수사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건축법상 가지고 있는 행정벌, 위반되면 형사처벌을 하는 행정벌 규정이 많이 있

는데 그것들은 건축공무원들의 검사·단속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다시 일반사법경찰관에게 넘겨서 그때 다시 조사하게 되면 건축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신속하게 할 수 없으니 건축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을 주어서 전문지식을 갖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특사경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너무 과잉되는 건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서영교 위원** 과잉되는 건 아니에요?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검찰국장 안태근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 가지고요, 경찰들도 단속이 안 됩니다. 경찰들도 건축 단속 대행을 불러다가 한참 물어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소위원장 이한성** 건축 안전이 중요하니까.

○**법무부검찰국장 안태근** 건축법이 어려워 가지고 검사들도 전담검사 아니면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주현** 잘 모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가서 다시 조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러한 것들이 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면 모든 분야를 다 특사경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할 거냐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제시한 소방 이런 경우에는 그때 막 진화를 하는데 바로 현장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축의 경우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증거가 다 남고, 그 사람 참고인으로 불러 가지고 일종의 감정증인 비슷하게 하면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금방 처리하고 마는 게 아니라 설계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감리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감리를 하고, 나중에 붕괴가 됐으면 그 사람들을 전문가로서 불러다가 지식을 빌리면 되는 것이지 그때 현장에서 바로바로 단속 안 하면 증거가 산일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하고 다르기 때문에 위험성 이런 문제를 한번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

제가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경찰권을 주는 것은 현장에서 단속할 때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지만 수사권을 너무 많은 사람한테 주는 것도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쩐지 조금 필요성이 덜 느껴진다 하는 측면을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

이 됩니다.

○**법무부차관 김주현** 건축의 경우에는, 사후에 확인하고 하는 것은 일반사법경찰들이 그런 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때 건축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을 불러서 확인하는데 건축 담당 공무원들은 건축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을 하는데 그게 지나고 나서 나중에 확인하면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것을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임내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다면, 바로 현장에서 적발해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면 그 필요성은 있겠지요. 그 실태에 따라, 저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뒤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것은 별로 필요가 없는데 만일 현장에서 적발해서 조치하고 단속이 꼭 필요한 부분이 많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서영교 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현장에서 제 시간에 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너무 건축 짓다가 공무원 무서워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그냥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아까 제가 했던 대부업법이나 방판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돼서 소수가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는데 건축물은 그냥 제 상식으로 동네에서 집 짓다가 공무원 뒷돈 대거나 뒷배 봐주다가 불일 다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공무원들이 다 사법경찰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법무부차관 김주현** 지금도 건축공무원들이 건축법 위반사실을 확인하면 전부 고발조치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형사상의 조치는 따라가는 것이고 한데 현장, 그리고 신속하게 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것을 건의해 왔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것과의 사이에 크게 민원의 소지가 더 높아지는 것보다는 그런 전문성이나 신속성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서 정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양면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한성**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조금 죄를 짓

겠습니다.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소위원장 이한성** 이 논의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 가지고, 우리는 다 논의가 잘 된 걸로 알고 신속하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상 밖으로 논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9항까지는 우선 논의를 한 것으로 치고 10항부터는 차후에 논의하고.

온종일 기다리신 법원행정처의 강형주 차장님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논의하는 것을…… 약간 파격적이긴 하지만 상고법원 관계법을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9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9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9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9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9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17시53분)

○**소위원장 이한성** 의사일정 제89항·90항·91항·92항·93항·94항입니다.

이 법률안은 다 홍일표 의원님께서 제출하셨는데 매우 바쁘셔서 지금 자리를 이석하고 계십니다.

임재주 전문위원, 의사일정 89항부터 94항까지 검토보고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재주** 일단 89항부터 91항까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장 이한성** 전문위원이 다르구나, 이게.

○**전문위원 임재주** 예, 다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러면 임재주 전문위원 당당은 89항부터 91항까지네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그렇습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서울특별시에 설치하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을 대법원의 사건분류 심사에 따라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나누어 심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조제1항제2호에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검증할 기회가 있는데 상고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없으며 특별상고시 4심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고사건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하급심 강화 방안 및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전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51쪽입니다.

법무부 의견은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상고심제도 개편은 사법제도 근간을 변경하는 중요한 것으로서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관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 취지에 위배될 수 있으며 사실상 4심제가 되고 이에 따른 비효율성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사람과 상고법원의 판결을 받는 사람들 간의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상고심법원을 복수로 하거나 관할을 범으로 정하지 않은 채 관할 결정을 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게 한 선진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각계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찬성의견으로서 국민은 상고심에 대하여 바람직한 법적 가치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과 권리구제 기능을 충실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국민의 양방향 요구는 하나의 법원에서 모두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은 법령 해석을 통일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권리구제 기능은 별도의 상고심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회

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고심 개선방안 중 가장 선호하는 방안은 대법관 증원안이었으며 상고법원 제도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우려가 있고 실질적인 4심제의 도입에 해당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보다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152쪽입니다.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요지만 간단하게……

○전문위원 임재주 예, 그럴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입법취지는 지금 말씀드렸고 상고제도의 개선 필요성 부분은 이미 충분히 아실 것으로 보고 상고제도의 개선방안 또한 이미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1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고법원 설치방안의 타당성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헌법 제1조가 천명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 원리상 상고심 개선방안은 대법원의 권위 유지나 업무 부담 감소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상고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남상고로 볼 수 없으며 사건 당사자인 국민이 하급심의 재판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반증이고 국회의 동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대법관으로부터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정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늘어난 상고사건 수에서 찾고 있지만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적은 것은 업무가 과중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기보다는 다양성이 보장된 인적 구성이 아닌 획일적·폐쇄적인 대법관 구성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회가치에 맞춰 새로운 가치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고법원 판사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대법관과는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법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상고법원은 최종 판단을 내리는 상고심법원으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헌법이 직접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여 이를 강제하고 있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동의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며 다양한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대법관으로부터 자신의 사건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강하다는 점, 정책법원 기능과 권리구제 기능은 분리될 수 없다는 점,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위험이 있다는 점, 상고법원이 최종심이 되는 경우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고법원 설치 외에도 예를 들어 대법관을 일부 증원하고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운영하여 사실심을 강화하고 심리불속행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등 상고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뒤에 168페이지 이후에는 이러한 논의가 전제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우선 정부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주현 상고사건 증가로 대법원의 업무 과중과 상고심 절차 지연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검토되어 왔습니다. 그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다양한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고, 현재까지 이 의견에 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대법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먼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고법원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쟁점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총론적으로 한 2~3분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7월부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작년 6월 17일 상고법원 도입 방안이 정식 건의된 이래 지난 1년여 동안 10여 차례가 넘는 공청회, 토론회 및 세미나 등에서 상고법원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심화시켜 왔고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저희들은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한 일간지에서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법원 이외 별도의 상고심법원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 1월 대한변협 설문조사에서 현재 제출되어 있는 법안과 같이 심리불속행 폐지를 전제로 한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 59%가 찬성의견을 보였고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설문조사에서도 상고법원 도입에 대하여 칠팔십%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는 등 재야 법조계의 분위기도 상고제도 개선의 현실적 대안이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 국민들과 재야 법조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고제도가 개선되어 심리불속행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상고심에서도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신속한 상고심 재판 진행으로 인해서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겪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요청에 부응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6개 법안 내용과 더불어 지난 4월 법사위 공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상고법관추천위원회,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의 추가 등 여러 대안도 함께 논의하시어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오랜 논의에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매일경제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상고법원을 만들면 1조 2000억 원의 경제적인 효과·편익이 발생한다’ 이런 경제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상고법원을 만들면 그 정도의 경제적인 편익도 아울러 창출된다는 점까지 첨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차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토론 시간은 시간관계상 우선 마무리

로 하고 의사일정 제93항·94항, 아까 상정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검토의견만 말씀을 한 2분 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아까 사법경찰관…… 오늘 두드린 것은 없었어요?

○소위원장 이한성 계속 하기로 했지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전문위원 강남일 보고드리겠습니다.

93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보고된 바 있는 상고법원 설치를 전제로 해서 상고장에 붙일 인지액이라든지 특별재항고장에 붙일 인지액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가면 될 것 같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94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것도 역시 법원조직법상의 상고법원 설치와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만, 단지 61페이지 보시면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특징이고 이것은 전에 심의하신 바 있는, 민사소송법상의 상고기각을 결정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개정안도 전에 심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은 궤이고, 내용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 상고법원 설치 시에도 이렇게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에는 결정으로 상고기각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참고인 의견서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것 역시 상고심법원의 경우에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변론을 열어서 진술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보시면, 상고심법원의 경우에 필수적 변호사대리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상고심의 경우에는 필수적 변호사대리를 도입하는 것이 비록 사적 당사자 간의 분쟁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볼 때 소송의 어떤 효율적 진행이나 법리 형성을 위해서도 훨씬 바람직한 제도로 보여져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아까 상정한 안건 중에서 의사일정 제92항이 수석전문위원 소관이라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간략하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먼저 대법원의 사건심사(안 제379조의2)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대법원에서 법원조직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서 대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이 심판할 사건을 정하도록 하고 사건 심사의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 필요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사건 및 재항고사건은 전부 대법원의 사건 심사에 따라 심판할 법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 같은 조 2항에 따르면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하는 사건,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건으로 대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상당한 사건을 대법원이 심판할 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건의 분류기준이 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사건이 대법원과 상고법원 중 어느 곳에서 심리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 도입입니다.

안 제390조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경우 상고법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서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또 변론을 열어서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고법원은 국민 다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판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은 특정한 사항에 관해서 변론을 열어서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만 참고인에게 의견서 제출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참고인의 변론 진술뿐만 아니라 의견서 제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참고인의 진술 및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서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법원 심판사건의 국선변호인에 관한 특칙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수석전문위원님, 양이 많습니까? 좀 요약해서……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거의 다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조금 더 간결하게 줄여서 해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대법원 심판사건의 국선변호사인에 관한 특칙입니다.

이 내용은, 개정안은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이 없는 때에 대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한 사건의 경우에는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한다거나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이후 사건 해결의 기준이 되고 또 재판의 결과가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률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법리 검토 또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인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변호사를 선임할 자격이 없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의 제한요건 없이 국가가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게 돼서 상고의 남용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또 국선변호 선임에 따른 국가 재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특별상고 및 특별재항고 제도 도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상고법원의 중국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법원·상고법원의 판례와 위반되는 사유가 있어서 판결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특별상고

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상고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특별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재항고에 대해서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지만 상고법원이 특별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경우 상고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 있거나 판례의 통일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특별상고 및 특별재항고를 허용해서 대법원이 상고심 심판을 다시 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해석의 통일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제3심인 상고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또다시 대법원의 재판을 허용하게 돼서 사실상 4심제로 운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또 현재도 법령 위반이나 판례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상고이유에서 법령 위반 등으로 주장해서 상고하는 사건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상고법원의 재판이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를 주장하면서 특별상고를 남용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 결과 분쟁을 중국적으로 해결하는 데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고 또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낙 중차대하기 때문에 6개의 의사일정을 세분의 전문위원이 나누어서 아주 심층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신 것에 비해서 보고 시간을 줄이게 된 점에 대해 전문위원님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와 대법원의 입장은 아까 개괄적으로 총론을 말씀하셨으니까 차후에 듣기로 하고 오늘 시간이 위낙 많이 돼서 의사일정 정족수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어서 이 정도에서 오늘은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부터 94항까지도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별히 자리를 끝까지 지켜 주신 존경하는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님 또 선배님이신 임내현 위원님, 좋은 법안을 많이 제출해 주신 서영교 위원님과 서기호 위원님,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전문위원과 법무부 또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속기사 여러분도 수

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도읍	김진태	서기호	서영교
이한성	임내현	전해철	홍일표

○위원 아닌 출석 의원(3인)

원혜영	이상민	정갑윤
-----	-----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전문위원	임재주
전문위원	강남일
전문위원	심태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김주현		
검찰국장	안태근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강형주		
사법정책실장	한승		